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4594 호 2015. 5. 8(금)

고 시

강원도고시 제2015-170호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고시	3
제2015-171호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고시	4
제2015-172호 고성군 거진 취·정수장 수도시설 폐지인가 고시(안)	5

공 고

강원도공고 제2015-624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공고	6
제2015-62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6
제2015-629호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7
제2015-630호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5
제2015-653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제2015-654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7
제2015-65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8
제2015-656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2
제2015-657호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2
제2015-658호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4
제2015-659호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7
제2015-662호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2

회 람								
--------	--	--	--	--	--	--	--	--

시 군 행 정

춘천시고시 제2015-133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57
강릉시고시 제2015-13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강릉영동대학교) 경미한 결정(변경),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9
제2015-1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166
홍천군고시 제2015-161호 홍천 군계획시설(도로:중로3-24)사업 실시계획(4차)변경인가 고시	168
홍천군공고 제2015-549호 홍천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시설)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173
제2015-560호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도로의 지정 · 공고	175
제2015-562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 공고	177
제2015-565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180
제2015-567호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도로의 지정 · 공고	181
정선군공고 제2015-342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183
철원군고시 제2015-19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토지세목고시	184
고성군공고 제2015-290호 고성 군계획시설(학교:홀리분교)사업 공사완료 공고	186

고 시

강원도고시 제2015-170호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항 및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같은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고성 어로요

가. 지정번호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7호

나. 지정명칭 : 고성 어로요

다. 지 정 일 : 2015. 5. 8(도보 고시일)

라. 보유자 인정

○ 서재호(徐載鎬)

— 성 별 : 남

— 생년월일 : 1937년 12월 27일(78세)

— 기·예능 : 어로요

— 주 소 : 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31

○ 손동식(孫東植)

— 성 별 : 남

— 생년월일 : 1941년 5월 5일(74세)

— 기·예능 : 어로요

— 주 소 : 고성군 거진읍 거성길 7-1

마. 지정 및 보유자 인정사유

○ 지정사유

— “고성 어로요”는 강원도 동해안의 고성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소리로 명태잡이소리, 미역따기소리, 후리질소리 등 어로작업할 때 부르는 다양한 소리와 사설이 잘 보존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어로요라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전승을 위해 지정가치가 큼.

○ 보유자 인정사유

— 서재호 보유자는 어로 현장에서 소리를 배우고 익힌 토박이 소리꾼으로 배를 띄우는 과정에서부터 어획을 끝낸 과정까지의 고성 어로요 전 과정을 구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리가 몸에 배어 있는 등 기량이 우수함.

— 손동식 보유자는 소년기부터 어로에 종사했던 고성 토박이 소리꾼으로 배를 띄우는 과정에서부터 어획을 끝낸 과정까지의 고성 어로요 전 과정을 고증하고 구연하는 등 기량이 우수함.

강원도고시 제2015-171호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고시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와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을 같은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횡성 회다지 소리

가. 지정번호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나. 명 칭 : 횡성 회다지 소리

다. 보유자 인정 : 양재학(梁在學)

○ 성 별 : 남

○ 생년월일 : 1958년 8월 21일(56세)

○ 기·예능 : 선소리

○ 주 소 : 횡성군 우천면 정금2길 하궁로 28-15

라. 인 정 일 : 2015. 5. 8(도보 고시일)

마. 인정사유

○ 양재학은 1998년 1월 19일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후 오랜 기간동안 전승활동을 해 오면서 횡성 회다지 소리를 이끌고 가는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보유자로 인정하여 체계적인 보존·전승에 기여토록 인정함.

2.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

가. 지정번호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5호

나. 명 칭 :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

다. 보유자 인정 : 김용우(金龍雨)

○ 성 별 : 남

○ 생년월일 : 1946년 5월 18일(69세)

○ 기·예능 : 선소리

○ 주 소 : 양양군 현남면 원포2길 18

라. 인 정 일 : 2015. 5. 8(도보 고시일)

마. 인정사유

○ 김용우는 이 지역의 탁월한 선소리꾼인 고 김진택의 뒤를 잇는 선소리꾼으로 특유의 구슬픈 소리를 구연하는 등 기량이 우수하므로 보유자로 인정하여 체계적인 보존·전승에 기여토록 인정함.

강원도고시 제2015-172호

고성군 거진 취·정수장 수도시설 폐지인가 고시(안)

고성군 거진읍 거진 취·성수장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폐지인가” 하였기에, 수도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원도지사

구 분	기 준 시 설 (인가일 : 1965.05.15)	폐지 시설	폐지사유
제 원	- 위치 · 취수시설 :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95번지 · 정수시설 :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95번지 - 시설용량 : 취수 7,000㎥/일, 정수 7,000㎥/일	- 좌동	고성 통합상수도 정수공급으로 가동 중지된 기존 노후 취·정수시설(거진 취정·수장) 폐지
취수시설 (7,000㎥/일)	- 취수보 2개 - 집수매거 2열 - 취수펌프: 양정24mH,편흡입벌류트펌프×2대 - 기타 : 진공펌프 2.2kw	- 좌동	
도수시설	- 주취수 D100mm(PE) - 보조취수 D100mmCIP) - 흡수정 B2.0m×L3.0m×H7.4m	- 좌동	
정수시설 (7,000㎥/일)	- 착수정 · 구조 : 장방형 RC조 · 규격 : L3.9m×B2.0m×H2.4m · 용량 : 17.94 ㎥ - 급속여과지 : 58.86㎥ D3.3m×H6.8m×2지 D4.0m×H6.8m×2지 D4.6m×H7.4m×1지 - 소독설비(염소소독) · 소독제 : 액체염소(1,000g/hr) · 염소주입시설 : 직결형투입기 2ℓ/hr × 1대 · 염소가스중화설비 : 가스검지기(반도체 확산식) 1조, 중화탑 1조, 가성소다 공급펌프 2HP×1대, 교반기 1HP×1대, 송풍기 2HP×1대 - 정수지(정방형 철근 콘크리트) · 규격 : L10.7m×B5.9m×H4.9m×1지 · 용량 : 300 ㎥	- 좌동	
		- 좌동	

※ 기타 관련서류는 고성군 상수도사업소(033-680-376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 고

강원도공고 제2015-624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 수리일자: '15. 04. 30.(목)
- 양도 · 양수(분할합병)사항

양 도			양 수			양도양수(분할) 후 존속법인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정보통신 공사업 (제201351 호)	대성전기통 신(주) (김영옥)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6, 4층 402호(용답동)		(주)현대중 합기술 (김영옥)	강원 원주시 북원로 2235-12, 917호(단계동, 이름레지던스)	정보통신 공사업 (제201351 호)	(주)현대 종합기술 (김영옥)	강원 원주시 북원로2235-12, 917호(단계동, 이름레지던스)

강원도공고 제2015-62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등록일자 : 2015. 05. 01.(금)
2. 등록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제330173호	(주)강원브레닉스	배준태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

강원도공고 제2015-629호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기존 조례 제명 불일치 정비 및 청소년지원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존 조례의 통합운영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존속기한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안 제1장, 제2조)
 -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근거
 - ※ (기존) 강원도청소년위원회 →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
 -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기본법 제56조 근거
 - ※ (기존)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
 -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 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부문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안 제2장 제3조)
 -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존내용 준용
 - “기금” 운용계획, 결산, 지원대상사업 선정 등 심의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2장 제4조 내지 제11조)
 -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회의록 등 기존 조례내용 준용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 기금의 조성 (안 제3장, 제12조)

-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기타수입금

○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3장, 제13조)

- 기금의 관리는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함
- 운용기금은 적립기금과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당해연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적립 등

○ 기금의 용도 (안 제3장, 제14조) ⇨ 사용용도 확대 근거 마련

기존조례	제정조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52조의 고등학교과정에 재학중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비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과정 신입생·재학생의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3.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청소년의 생활안정비 지원 4.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3.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 학비 지원 7.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장학금·등록금 지원 8.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청소년기본법」 제55조(기금의 사용등) 규정 준용함

○ 기금운용심의회 (안 제3장, 제15조)

-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함

※ (기존) 강원도조정조정위원회 →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

➡ 기금운용 중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

○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안 제3장, 제16조)

- 기금조성, 기금운용계획수립, 변경, 결산, 지원대상사업 선정 등

○ 기금운용계획과 존속기한(안 제3장, 제17조)

- 기금운용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및 존속기한 규정

※ 기금의 존속기한(2019.12.31.까지, 존치 필요시 조례개정 연장 등)

○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 (안 제4장, 제18조)

- 도내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청소년으로 함

○ 수상부문 (안 제19조), 후보자 추천(안 제20조), 심사위원회(안 제21조), 시상(안 제22조), 기록보존(안 제23조)는 이전 동일

○ 시행규칙 (안 제4장, 제24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여성청소년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200-700)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 연락처 : 전화(033-249-3324), 팩스(033-249-4010)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청소년상“이라 한다)“이란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제2장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국장 및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강원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장 및 도의회의원 또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

제1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도 및 시·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는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제출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기금은 강원도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운용기금은 이자수입·기타수입 및 당해연도 도·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

적립할 수 있다.

⑤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제1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3.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 학비 지원
7.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장학금·등록금 지원
8.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5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대행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기금운용심의회 기능)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변경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제17조 (기금의 운용계획과 존속기한)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제18조 (수상대상자) 청소년상 수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이상 강원도 내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19조 (수상부문)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부문별 1인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적 감성부문
2.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부문
3. 봉사과 협력 부문
4. 모험심과 개척정신 부문
5. 국제감각 부문
6. 환경의식 부문
7. 전통인성 함양 부문

제20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각급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도지사에게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조례에 의하여 청소년상을 받은 자 또는 정부 모범청소년으로 수상을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 (심사위원회) ①청소년상 심사·결정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수행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수상대상자를 심사 선발한다.

③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사로 선발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으로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시상) ①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23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강원도조례 제3656호)는 이를 폐지한다

②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강원도조례 제3457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강원도자랑스러운청소년상조례(강원도조례 제359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내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강원도공고 제2015-630호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 기금지원을 위한 범위 와 기준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육성위원회 위·해촉 (안 제2조)
 - 위촉시 사전동의와 해촉시 서면통보 하도록 함
- 위원회 자문 등 시기 및 회의록 서식 (안 제2조, 제3조)
 - 1월말까지 시행계획 확정, 수시자문 등,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
- 기금지원 범위와 기준 (안 제5조)
 - 기존내용 보완 및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기준 등
- 기금의 지원신청 (안 제6조)
 - 조례안 제14조의 용도에 맞게 신청방법 및 서식 등 규정
- 지원금의 지급중지 및 회수 (안 제7조)
 - 휴학, 퇴학 등 지급중지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시 회수하도록 함
- 장부의 비치 (안 제8조)
 - 기금관리를 위한 출납대장 등 장부를 비치토록 함

○ 수상대상자 선정기준 (안 제9조)

- 청소년상 수상부문별 기준(별표 2)과 심사제외 대상 규정

○ 구비서류 (안 제10조)

- 청소년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0호서식) 및 제출서류 규정

○ 기록보존 (안 제12조)

- 청소년상 수상자 수상대장(별지 제11호서식) 비치·관리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여성청소년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200-700)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 연락처 : 전화(033-249-3324), 팩스(033-249-4010)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해촉) ①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②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대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자문 등) 조례 제3조의 규정중 제1호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당해 연도 1월말까지 확정하고 기타사항은 수시 자문·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제4조 (회의록) 조례 제9조 규정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기금지원 범위와 기준) ①조례 제14조제6호 학비지원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52조의 고등학교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하여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100분의 150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학교로부터 납부고지 되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한다.

② 조례 제14조제7호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재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조례 제14조제8호 청소년의 건전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적 감성과 정서, 창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문예행사 또는 수련활동
2.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학문탐구를 위한 유적지 등의 탐방활동
3. 체력증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육, 등산, 기타 모험활동
4.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6조 (기금의 지원신청 등) ①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와 관련기관·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4조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육성기금지원신청 및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4조 제2호·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 및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는 조례 제14조 제5호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요하는 청소년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의 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⑤조례 제14조 제6호의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읍·면·동장은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한다.

⑥조례 제14조 제7호의 장학금·등록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며 시장·군수는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대학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조례 제14조 제8호에 따른 건전활동과 관련한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제7조 (지원금의 지급중지 및 회수) ①기금을 지원받은 청소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회부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학 또는 휴학을 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대학생인 경우 타 시도 소재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
3. 지원도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을 경우
4. 경제력 향상으로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회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출납대장
3. 기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9조 (수상대상자 선정기준) ①조례 제19조 규정의 수상부문별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상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구비서류) ①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서류(작품, 사진, 인쇄물 및, 스크랩 등) 1부

②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조례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장은 청소년상 수상대상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다음에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기 준				
일 반 학 생	학과성적 · 기능보유	1. 직전학기에 아래의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구 분	4.5점만점	4.3점만점	4.0점만점	
		취득평점	3.0점 이상	2.8점 이상	2.6점 이상	
	연 령	2. 직전학기 시험실적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인 자				
		3. 전국단위이상의 예 · 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자				
	학 교 범 위	장학금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자 (다만, 24세를 넘은 자라도 군복무 또는 취학적령기를 지나 늦게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자력으로 학자금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국 가 장 학 금 지 원 대 상	기 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중인 자				
	학과성적 · 소득범위	1.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모범을 보인 자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장학제도 등에 의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거나 등록금을 면제받는 자는 지원 제외				
		◦ 도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주1)} 이하 대학생 ^{주2)} 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주3)} 을 충족하는 자 주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 8분위 이하인 자 주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대학과정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주3) 신·편입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상기 대상자 선정은 도내 대학 재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최종 선발된 학부 재학생과 같다.				
		◦ 장학금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자 (다만, 24세를 넘은 자라도 군복무 또는 취학적령기를 지나 늦게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은 예외로 한다)				
	기 타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장학제도 등에 의한 장학금 중복 수혜는 인정하지 않음				

【별표 2】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부문별 선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청소년상 수상대상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문	선발 인원	기 준
문화적 감성	1	•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적 감성개발과 정서 함양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
과학·정보마인드	1	•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우수과학발명품 창안 등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능력 및 정보화마인드를 갖춘 청소년
봉사와 협력	1	•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모험과 개척	1	• 자연탐사, 국토순례 등 강건한 신체단련과 정신력 강화로 용기와 인내심 배양에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환경의식	1	•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환경 개선 및 보호 활동에 모범적인 청소년
국제감각신장	1	• 외국어경시대회 입상자, 청소년국제교류행사 참가 등 각국 문화이해와 교류를 도모하고 적극 동참 청소년
전통인성함양	1	• 가정과 학교생활 등에서 충효와 애국(애향)등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살리고 선양하는 모범적인 청소년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일시		장소		참석위원수	
안건					
(회의내용 및 결과요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육성기금지원신청 및 추천서 (조례 제14조 제1호·제5호 해당자)						지원 구분	
신청인	성명	(한자)					
	주소				학력		
	학교명 훈련기관명		지원 분야		지원 신청액	천원	
	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개월)					
가족사항							
구분	성명	본인과의 관계	연령	교육 정도	건강 상태	직업	월평균 소득
가족							
“							
“							
“							
보호자							
주거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월 총소득액 (천원)						
재산	부동산	주택(천원) 토지(천원)					
	동산	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					
본인은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추천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을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육성기금지원신청 및 추천서 (조례 제14조 제3호해당자)					지원구분	
신청인	단체		대표자		단체구분	☐ 법인 ☐ 개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시설현황	대지	㎡		건물	㎡	
	기타자산					
	수용인원 (1일)			시설소유 형태	☐ 자가 ☐ 임대	
신청내용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천원(자부담)				
	지원신청액	천원				
	본인은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위 사람을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장·군수 추천의견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육성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소요경비(총액)	천원	보조사업자 부담액	천원
보조금액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보조율	
보조사업 목적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육성기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소요예산내역 포함)			

【별지 제5호서식】

현 지 조 사 의 건 서					
부양의무자	주 소	(전화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대상자와의관계		
	실 태				
	재산상황				
생활안정비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현거주지	(전화 :)			
	지급사유				
	지급금액	원	세대원중 지원대상인원	명	
	생계를달리하는 부양의무(가능)자 존재여부			유(관계:), 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			
성 명	관 계	연령	건 강 상 태	직 업	월평균소득액(원)
생활실태 및 시장 · 군수 의견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기 보호대상자 여부 확인 2. 향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생활안정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학 비 지 원 신 청 서						
신청인 (보호자)	주 소	(전화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학생과의관계			
	직 업			월평균소득액		
	주거상황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재산상황	부동산	주택 : 천원, 토지 : 천원			
		동 산	천원(임대보증금 등)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학비지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학교		학과	학년	
가 족 사 항						
성 명	관 계	연령	건 강 상 태	직 업	월평균소득액(원)	
본인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학비를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읍 · 면 · 동장 확인란						
1. 재산평가액 :		2. 가구월평균소득액 :				
3. 가구원수 :		4. 재학 및 학비지원(면제)여부 확인 :				
5. 생활실태등 의견 :						
위 사람을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학비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시장 · 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장 학 지 급 신 청 서				
신청인 (보호자)	주 소	(전화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학생과의관계	
장 학 금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거 주 지	(전화 :)		
	학 교	학교 학과	학년(학번 :)	
	성 적	년도	학기	취득학점 : /
지원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 (보호자 또는 학생)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본인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시장 · 군수 확인란				
1.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세대 확인 : 2. 재학 확인 : 3.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 5. 생활실태등 의견 : 위 사람을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학비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예·체능, 기능대회 입상자는 입상증명서류) 2. 학사정계유무확인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등 록 금 지 급 신 청 서

신청인 (보호자)	주 소	(전화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학생과의관계	
등 록 금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거 주 지	(전화 :)		
	학 교	학교	학부·학과	학년(학번 :)
지원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 (보호자 또는 학생)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본인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등록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대학특별전형(도지사추천) 합격증명서(신입생) 1부. 2. 재학증명서(재학생) 1부. 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재학생) 1부. 4. 등록금(입학금 포함)고지서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건 전 활 동 사 업 신 청 서

단 체 명		대 표 자	
법 인 등 록 증 (사업자등록번호)		실무 담당자	직위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팩 스	
		핸드폰(실무자)	
		E-mail(실무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	기금신청액	천원
		자체부담액	천원
세부사업계획서	따로 붙임		
위와 같이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청소년 건전활동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단체명]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제 회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추천서

① 추천부문				
②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소 속	학 교	학 년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본인 HP	
③ 추천의견				
위 청소년을 제 회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3. 명함판 사진 2매(별도 연락) 4. 공적 증빙자료 사본				

【별지 제11호서식】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대장

연도	수상부문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개요	비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교/학년		

강원도공고 제2015-653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5.4.7, 대통령령)에 따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확립, 재난대응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위기 대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국 신설 및 기구·인력 보강
- 의회사무처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 보강 등 시급한 당면현안 대응을 위해 정원을 증원.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구 분	정원(명)		
	당초(A)	변경(B)	증감(B-A)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4,451	4,470	19
집행기관의 정원	1,923	1,940	17
소방본부·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2,396	2,396	-
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50	50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82	84	2

나.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4조 별표3)

구 분	정원(명)			비고
	당초(A)	변경(B)	증감(B-A)	
총계	4,451	4,470	19	
정무직	1	1	-	
일반직	1,801	1,820	19	재난안전국 신설 등 인력 보강
별정직	6	6	-	
연구직	172	172	-	
지도직	25	25	-	
소방공무원	2,396	2,396	-	
교육공무원	50	50	-	

다.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추계액('15~'19년) : 6,507백만원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4

○ F A X : 033-249-4143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451명”을 “4,4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23명을 “1,940명”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82명”을 “8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 <개정 2015.6. >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총 계	4,470	-					
정무직 계	1	-					
도지사	1	1					
별정직 계	6	-					
4급상당	1	1					
5급상당이하 소계	5	-					
일반직 계	1,820	-					
1급	1	1					
1 ~ 2급	1					1	
2 ~ 3급	2	1	1				
3급	12	8		1	1	2	
3 ~ 4급	2	2					
4급	86	49	9	7	4	5	12

5급이하 소계	1,701	-					
전문경력관 소계	15	-					
연구직 계	172	-					
연 구 관	39			35			4
연 구 사	133	-					
지도직 계	25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9	-					
소방공무원 계	2,396	-					
소방준감	0						
소 방 정	19	4		15			
소방령이하 소계	2,377	-					
교육공무원 계	50	-					
총 장	1			1			
교 수	35			35			
조 교	1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4,451명</u> 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4,470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923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 <u>1,940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82명</u>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84명</u>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재난안전국 신설 및 의회사무처 등 기능 보강, 당면 현안 수요 대응에 따른 기
구와 정원 조정

- 일반직 19명

나. 관련 조문 : 정원 조례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451명에서 4,470명(증 19명)으로 조
정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19명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대비 2% 상승 하는 것을 기준
으로 함

* 공무원 보수인상률 : '14년 / 1.7%, '15년/3.8%

○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2015년 기준인건비 일반직(74,467천원) 1인당 인건비를 적용

* 2015년도는 5개월 인건비 적용

나. 추계 결과 : 총 6,507,708천원

연도별	산출내역		금액(천원)
합계			6,507,708
2015년	일반직	$74,467 \times 19\text{명} \times 5/12\text{월}$	559,530
2016년	일반직	$1,414,873 \times 102\%$	1,443,170
2017년	일반직	$1,443,170 \times 102\%$	1,472,033
2018년	일반직	$1,472,033 \times 102\%$	1,501,473
2019년	일반직	$1,501,473 \times 102\%$	1,531,502

다. 채용조달 방안

○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로 충당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기획조정실 기획관 김만기
연락처	(033) 249 - 2110

강원도공고 제2015-654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5.4.7, 대통령령)에 따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확립, 재난대응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위기 대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국 신설 및 기구·인력 보강
- 의회사무처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 보강 등 시급한 당면현안 대응을 위해 정원을 증원.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별표)

○ 기관별

구 분	정원(명)			비고
	당초(A)	변경(B)	증감(B-A)	
총계	4,451	4,470	19	
본청	1,226	1,240	14	재난안전국 신설 등
의회사무처	82	84	2	경리담당 신설
직속기관	2,594	2,594	-	
출장소	104	103	△1	
경제자유구역청	63	63	-	
사업소	382	386	4	관리과, 경리담당 신설

○ 직급별

구 분	정원(명)			비고
	당초(A)	변경(B)	증감(B-A)	
총계	4,451	4,470	19	
정무직	1	1	-	
일반직	1,801	1,820	19	재난안전국 신설 등 인력 보강
별정직	6	6	-	
연구직	172	172	-	
지도직	25	25	-	
소방공무원	2,396	2,396	-	
교육공무원	50	50	-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4

○ F A X : 033-249-4143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6] <개정 2015.1.2 > <개정 2015.4. >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표 (총괄)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총 계		4,470	1,240	84	2,594	103	63	386
정무직	계	1	1					
1급	도지사	1	1					
별정직	계	6	6					
4급상 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5급상 당	소계	3	3					
	국제관계대사	1	1					
	비서관	1	1					
	정책특보	1	1					
6급상 당	소계	1	1					
	비서	1	1					
8급상 당	소계	1	1					
	비서	1	1					
일반직	계	1,820	1,087	84	135	103	63	348
1급	소계	1	1					
	관리관·별정	1	1					
1~2급	소계	1					1	
	관리관·이사관	1					1	
2~3급	소계	2	1	1				
	이사관·부이사관	2	1	1				
3급	소계	12	8		1	1	2	
	부이사관	12	8		1	1	2	
3~4급	소계	2	2					
	부이사관·서기관	2	2					
4급	소계	86	49	9	7	4	5	12
	행정	41	26	3	6	1	4	1
	기술	11	7			2	1	1
	행정·기술	18	15		1	1		1
	행정·별정	4		4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기술·농업연구	2						2
		기술·녹지연구	1						1
		기술·수의연구	1						1
		기술·어촌지도	1						1
		기술·해양수산연구	1						1
		행정·전문경력관가군	2	1					1
		행정·기술·별정	2		2				
		행정·기술·해양수산연구	1						1
		기술·농업연구·수의연구	1						1
	5급	소계	302	223	14	11	15	15	24
		행정	148	110	11	8	3	10	6
		공업	3	3					
		녹지	8	7					1
		수의	1	1					
		농업	8	6		1			1
		해양수산	7				6		1
		보건	2	2					
		환경	7	6				1	
		시설	30	26				4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5	4		1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6	4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16	14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별정	1		1				
		행정·전문경력관가군	4	4					
		행정·학예연구	1						1
		공업·시설	5	1					4
		공업·방송통신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1	1					
		농업·농업연구	2	2					
		녹지·녹지연구	1						1
		수의·수의연구	8	1					7
		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보건·간호	2	2					
		보건·약무							
		보건·약무·간호	1	1					
		환경·시설	2	2					
		환경·환경연구	1	1					
		행정·농업·농업연구	1						1
		행정·시설·학예연구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의무·보건·간호	1	1					
		행정·환경·공업	1	1					
		환경·녹지·환경연구·녹 지연구	1						1
	6급	소계	562	382	18	30	33	25	74
		행정	236	174	14	12	6	14	16
		세무	7	7					
		사회복지	4	4					
		전산	14	10		3		1	
		숙기	1		1				
		공업	29	19	1	5		1	3
		농업	21	17				1	3
		녹지	18	13					5
		수의	17	4					13
		해양수산	21			4	14		3
		보건	8	7				1	
		간호	4	2		2			
		환경	16	14				2	
		시설	73	55		1	3	4	10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방송통신	11	10			1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4	4					
	행정·전문경력관나군	1	1					
	전산·시설	1	1					
	공업·농업	1			1			
	공업·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농업·녹지	1					1	
	농업·농업연구	8						8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3	3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사서·기록연구	1	1					
	환경·환경연구	1	1					
	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5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3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환경·공업	1	1					
	농업·수의·농업연구	1						1
	농업·농업연구·전문경 력관나군	1						1
	사무운영	2	2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통신운영	4	2		1	1		
		기계운영	1	1					
		선박기관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1				1		
		기계운영·열관리운영	1	1					
		기계운영·운전	7	1	1				5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 운영	1				1		
	7급	소계	527	326	16	31	24	12	118
		행정	192	142	10	13	7	7	13
		세무	4	4					
		사회복지	6	6					
		전산	14	12		1			1
		사서	2		1	1			
		속기	2		2				
		공업	21	10		3		1	7
		농업	21	12		2			7
		녹지	18	10					8
		수의	30	3					27
		해양수산	17			4	9		4
		보건	7	6				1	
		식품위생	1	1					
		간호	1	1					
		환경	11	11					
		시설	61	46			2	1	12
		방송통신	15	12		1		2	
		운전	4	3	1				
		위생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전산	4	4					
		행정·녹지	1	1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행정·시설	5	5					
	행정·별정	1		1				
	행정·사무운영	4	1		1			2
	전산·시설	1	1					
	공업·시설	1						1
	공업·운전	2			1			1
	공업·방송통신	1	1					
	해양수산·시설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환경·녹지	1	1					
	환경·시설	1	1					
	보건·간호	3	2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3	3					
	보건·사회복지	1	1					
	사서·기록연구	1	1					
	행정·환경·공업	2	2					
	공업·시설관리·사무운 영	1						1
	보건·환경·시설	1	1					
	사무운영	4	4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1						1
	통신운영	1	1					
	기계운영	7	1	1	1			4
	선박항해운영	1				1		
	선박기관운영	1				1		
	농림운영	2	1					1
	사육운영	2						2
	기계운영·운전	23	2		1			20
	기계운영·전기운영	5			1			4
8급	소계	175	72	10	16	16	3	58
	행정	57	36	3	3	2	2	11
	사회복지	1	1					
	전산	1	1					
	사서	1			1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9	3		1			5
	녹지	6	2					4
	농업	2						2
	해양수산	14				10		4
	시설	11	3					8
	방송통신	2	1		1			
	환경	3	3					
	보건	3	2		1			
	운전	15	9	1	4		1	
	시설관리	2				1		1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무운영	1	1					
	공업·환경	1	1					
	공업·방송통신	1	1					
	공업·운전	2						2
	농업·농업연구	1						1
	농업·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5	1	1	1	1		1
	통신운영	5	2	1		2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4	1	1				2
	열관리운영	2			1			1
	사육운영	2						2
	기계운영·공업	1						1
	기계운영·전기운영	1						1
	기계운영·시설관리	1			1			
	기계운영·운전	11						11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 운영	1			1			
	9급 소계	135	17	15	35	10		58
	행정	1			1			
	속기	6		6				
	공업	6			1			5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농업	1						1
		운전	30		1	13	1		15
		위생	1	1					
		해양수산	3			1	1		1
		시설관리	7		1	2			4
		사무운영	27	13	5	4	1		4
		통신운영	3		1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0	1		3			6
		열관리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3				3		
		선박기관운영	1				1		
		농림운영	3						3
		사육운영	4						4
		행정·사무운영	1			1			
		공업·시설관리	1			1			
		공업·운전	2						2
		사무운영·시설관리	6	1		3			2
		기계운영·전기운영	1						1
		기계운영·열관리운영	1			1			
		기계운영·농림운영	2			2			
		기계운영·운전	9			1			8
		통신운영·전기운영	1	1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 운영	1				1		
	전문경 력관	소계	15	6	1	4			4
		가군	1	1					
		문화재연구관	1	1					
		나군	9	3		4			2
		기자재관리원							
		농기계교육교관	4			4			
		비상대비원	1	1					
		향토사편찬원	1	1					
		직업훈련교사	2						2
		VTR촬영편집원	1	1					
		다군	5	2	1				2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의전관리원	1	1					
	VTR영상편집원	1		1				
	열관리운영원	1	1					
	사육운영원	2						2
연구직	계	172	2		132			38
연구관	소계	39			35			4
	녹지연구	2						2
	농업연구	19			18			1
	보건연구	5			5			
	해양수산연구	1						1
	환경연구	8			8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연구사	소계	133	2		97			34
	녹지연구	9						9
	농업연구	55			51			4
	보건연구	14			14			
	수의연구	9						9
	학예연구	4	2					2
	해양수산연구	8						8
	환경연구	28			26			2
	보건연구·환경연구	6			6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농촌지도	6			6			
지도사	농촌지도	19			19			
소방직	계	2,396	144		2,252			
4급	소방정	19	4		15			
5급	소방령	61	17		44			
6급	소방경	215	20		195			
6급	소방위	218	26		192			
7급	소방장	440	43		397			
8급	소방교	797	32		765			
9급	소방사	646	2		644			
교원직	계	50			50			
총장	총장	1			1			
교수	교수	35			35			
조교	조교	14			14			

강원도공고 제2015-65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5.4.7, 대통령령)에 따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확립, 재난대응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위기 대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국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실·국·본부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관련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국을 설치하며 실·국·본부 명칭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안 제5조)

- 기획조정실·재난안전국·경제진흥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농정국·녹색국·건설교통국·동계올림픽본부·소방본부

나. 실·국·본부의 소관업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기존 기획조정실 비상기획 업무를 재난안전국으로 이관하고, 경제진흥국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로 이관(안 제6조)
- 재난안전국 분장 사무 신설(안 제6조의1)
- 기존 경제진흥국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로 이관(안 제7조)
- 기존 건설교통국 자연재난관리·방재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국으로 이관(안 제13조)
- 기존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재난·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국으로 이관(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기획관

○ 전 화 : 033-249-2264

○ F A X : 033-249-4143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조정실·경제진흥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농정국·녹색국·건설교통국·동계올림픽본부·소방안전본부”를 “기획조정실·재난안전국·경제진흥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농정국·녹색국·건설교통국·동계올림픽본부·소방본부”로 한다.

제6조제14호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국장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재난·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획에 관한 사항
2.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관리·방재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제10호의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1호의 “자연재난관리·방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제7호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호 “재난·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경제진흥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농정국·녹색국·건설교통국·동계올림픽본부· <u>소방안전본부</u> 를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기획조정실· <u>재난안전국</u> ·경제진흥국·-----·동계올림픽본부· <u>소방본부</u> 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3. (생략)	제6조(기획조정실) ----- -----. 1. ~13. (현행과 같음)
<u>14.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u>	<u>14.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u>
(신설)	제6조의2(재난안전국) 재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획에 관한 사항 2.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관리방재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진흥국) 경제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제7조(경제진흥국) ----- -----. 1. ~ 9. (현행과 같음)
10.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제13조(건설교통국)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자연재난관리·방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5조(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8. 재난·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획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7. (생략)	7. ~ 15. (현행 제9호부터 제17호와 같음)

강원도공고 제2015-656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5.4.7, 대통령령)에 따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확립, 재난대응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위기 대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부서별 소관 업무를 조정
-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농업기술원 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등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부서별 소관 업무를 조정

2. 주요내용

- 경제진흥국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등 규제개혁 업무 소관을 기획관실로 이관함(안 제8조제3항)
- 기획조정실 비상기획과와 소방안전본부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국으로 이관, 방재과 신설 등 사무분장을 조정함(안 제9조)
- 건설교통국 치수과의 방재 및 자연재난 관련 사무를 재난안전국 방재과로 이관 등 사무분장을 조정함(안 제16조제8항)
-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총괄과 삭제 조정함(안 제18조)
-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기술지원부의 명칭을 “국”으로 변경하고, 특화작물연구소 산채연구분소를 산채연구소로 독립·격상 설치함(안 제22조, 제23조)
- 도로관리사업소 기능 강화를 위해 관리과를 신설하고, 기술담당관을 도로보수과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55조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기획관

○ 전 화 : 033-249-2264

○ F A X : 033-249-4143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강원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 등의 직급 및 소 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3조(분장사무의 조정) 실·국·본부장, 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출장 소장 및 사업소장 등은 그 하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과·담당관 등에 대한 사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무를 조정할 때에는 사전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통보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본청

제4조(보좌기관) ① 도지사 밑에 대변인을 둔다.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및 총무행정관을 둔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정시책의 홍보 및 여론모니터
3.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방송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작성 및 기록보존
5. 도보발간에 관한 사항
6. 국·도정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7. 도정 홍보물의 종합기획·제작 총괄
8. 관광·지역산품의 이미지 및 홍보물 기획·개발·홍보에 관한 사항
9. 뉴미디어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10. 도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11. 도정 관련 보도사항의 정리, 분석
12.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13. 홍보용 기자재 운영관리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소속행정기관 및 시군에 대한 감사
2. 출자출연기관 및 소관단체 등에 대한 감사
3.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및 지시사항 처리
4. 회계감사 및 기술감사에 관한 사항
5. 진정·민원사항 조사처리
6. 공직자 등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 업무 추진
7. 공무원 복무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8.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제7조(충무행정관) ① 충무행정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충무행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의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
4.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운영
5.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징계·포상
6. 시군 공무원의 인사업무 지도·협의 및 인사통계 업무
7. 공무원의 임용시험 관리 및 교육훈련
8. 각종 자격·면허시험 관리
9.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10. 각종 공인신조·개각의 승인 및 관리
11. 문서수발·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13. 도와 시·군 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
14.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5. 시·군 공무원 소집 조정·통제
16. 반사회 운영, 집단민원, 지방행정 동향관리
17. 행복추진단 구성 운영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19. 미수복지구 실태민 지원 및 관련단체 지원
20. 선거 및 국민투표
21.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업무 지도
23. 사무혁신 및 정부 3.0 업무에 관한 사항
24. 민간단체에 대한 협조·지원
25.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26. 선행도민 대상제 운영
27.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28. 민원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일반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0.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 총괄·조정
31. 도단위 분권·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
3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치단체간 사무의 재배분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관·예산과·세정과·회계과·균형발전과·교육법무과를 둔다.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기획관은 지방 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균형발전과장·교육법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2. 도정발전 정책개발
3. 도정시책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4. 도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5. 광역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
6.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7. 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8. 강원발전연구원의 지도·감독
9. 서울본부 운영 지도·감독
10. 도민 및 공무원 제안·창안제도 운영
11. 정책관리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12.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13. 강원 녹색성장 포럼(경제, 복지, 환경, 관광문화) 운영 지원
14.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의회업무 협조

16. 도·시군의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
17. 사무분장 조정,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18. 사무위임·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19.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등 규제개혁 종합 추진
2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1.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2.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3. 통계결과의 분석 및 공표
24. 인구·주택·농림어업·경제 분야 통계조사
25.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및 분석
26. 보고통계 자료수집 및 통계작성
27. 통계품질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예산의 편성·집행·운영 총괄
2. 지방교부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3. 시·군 재정조정, 보조금·교부세 관리 및 재정 운영 지도
4. 전시예산 편성 및 종합조정
5. 지방채 승인신청 및 관리 운영
6. 민간투자 대상사업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
7. 경영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지방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 조정
9.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리
10.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지도
11.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효율성 등 투자분석 조사에 관한 사항
1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출자·출연 사전심사제 운영
13. 통합관리기금 운용 관리
14.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관리

⑤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세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부금품 모집통제 및 도 금고의 감독

5. 부동산 등급설정, 과표 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6. 시·군세 부과·징수 지도감독

7. 지방세무의 감찰, 세무범칙 사건의 조사처리

8.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⑥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비 지출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

2. 회계직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3.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등 총괄관리

5.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에 관한 사항

6.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관련 업무

7. 국·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8. 공유부동산 시가조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9. 국·공유재산의 처분·대부·사용허가·용도폐지·등기에 관한 사항

10. 시·군유재산 관리업무의 지도 감독

11. 청사시설 관리 및 사업소 건축물 신축·증축 등 기술 지원

12. 관용차량, 관중기, 관공선 정수승인 및 운영관리 지원

⑦ 균형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엠제트 관련 사무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디엠제트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기록보존 등 집대성·세계적 명소화 추진

3. 평화상 운영, 한국 디엠제트포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등 추진 및 그 밖에 디엠제트에 관한 사항

4.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관리, 지원제도 추진

5. 지역발전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6. 지역행복생활권 강원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및 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어촌마을안길 정비사업 및 농어촌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9.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 경계 관문지역 정비사업

11. 군부대 주변 및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

1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14.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특정지역 지정 및 관리
16.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7.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18.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0.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조정·시행,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운영
21.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운영,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22.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⑧ 교육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 및 교육관련 협조·지원
2. 초중고교생 교육 지원
3. 대학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6.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7. 도 자치법규·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8. 법령의 질의·해석
9. 자치법규의 편찬 및 법제사무 지도
10. 도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11.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폐의 심사
12. 소송사건의 조정·통제
13.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14. 소청에 관한 사항

제9조(재난안전국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국에 안전총괄과·방재과·비상기획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방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비상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난 총괄대응 및 조정·기획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원
3. 지역안전관리계획 및 지역재난대응계획 수립총괄
4. 재난안전 관련 각종 매뉴얼 통합관리
5. 재난 예방 및 안전취약분야 점검 총괄

6. 재난관련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7. 재난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8. 안전·재난 분야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9. 안전문화 정책기획 및 총괄조정
10.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 점검 및 조치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1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
14. 축제·공연장 및 여름철 물놀이 관련 안전대책 추진
15.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사업 추진
16. 유도선 사업면허 및 지도관리
17.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안전 및 재난 총괄에 관한 사항

④ 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및 방재관련 종합 기획·조정
2. 자연재난 관리계획 수립 시행
3.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4. 자연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연재난대비 물자·장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
6. 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7.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작성·관리
8. 지역방재 기본계획 및 집행 계획의 수립·조정
9.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10. 방재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1.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개선사업
12. 재난복구사업의 추진
13. 재난응급대응체제 구축
13. 그 밖에 자연재난 및 방재에 관한 사항

⑤ 비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추진
2.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3. 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대군인 정착지원 및 센터 운영·지원
5. 주민신고망 및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6.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7. 공익근무요원 배정, 비밀문서 및 보안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비상사태 대비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
9. 민방위대의 편성, 운영, 동원, 교육, 훈련, 시설·장비 관리
10. 경보통제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경제진흥국에 두는 과) ① 경제진흥국에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과·전략산업과·에너지과·자원개발과·정보산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사회적경제과장·전략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과장·자원개발 과장·정보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경제진흥 확대회의 운영 및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4. 지역경제 관련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5. 경제동향 분석 및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작성 관리
6. 물가대책 및 착한 가격업소 관리
7.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
8.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9. 전통시장 육성 지도관리 및 중소유통사업 관련 업무 추진
10.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11. 가격표시제 운영지도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12. 노동쟁의 예방 및 노동단체 동향관리·지원, 노·사·정 협의 업무
13. 기능인 양성·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고용촉진
14.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추진 및 직업소개사업 지도 감독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경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자활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로·마케팅 지원

5.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민간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산업 육성전략 종합 기획·조정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기능성신소재, 바이오메디칼 등) 육성지원
3. 바이오산업·의료기기산업·녹색소재산업 등 지식산업 육성지원
4. 스포츠산업·지식서비스 산업등 육성지원
5.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
6. 지식재산 진흥사업 추진
7. 소프트웨어산업·멀티미디어 정보기술산업 육성지원
8. 특허권 관리 및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9. 강원테크노파크 육성 지도·감독
10.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⑥ 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2. 지역에너지 정책수립 및 조정
3. 「에너지법」 운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홍보에 관한 사항
6. 집단에너지 사무에 관한 사항
7. 신재생에너지 중장기계획 수립
8.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사업 추진
9.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
10.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투자 및 산업화 촉진 지원
11.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지원
12. 그 밖에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추진
13. 발전사업 인·허가 및 등록업체 지도감독
1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추진
1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송·변전, 발전시설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농어촌 전기 공급에 관한 사항
17.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1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인·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19.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20. 천연가스 공급 및 수급계획 추진
21.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승강기·계량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24. 「석탄산업법」에 따른 연탄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5. 서민연료 수급 안정대책 등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
26.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7.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9.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적응 등에 관한 사항
30. 기후변화대응 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1.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에너지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 ⑦ 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탄광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영 관리
 3.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및 관리
 4. 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5. 강원랜드 카지노사업 및 법인운영 지원
 6. 석탄활용 첨단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7. 탄광지역 주민 창업 지원
 8.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9. 비축무연탄 기금 운영 및 관리
 10. 비축무연탄 방출 및 관리
 11. 광업관련 인·허가 및 광업권·조광권 관리
 12.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13. 그 밖에 탄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 ⑧ 정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 종합기획·조정
 2. 도정업무 종합 정보화 및 시군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
 3.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각종 행정 정보화 정보시스템

4. 정보자료 구축 및 전산업무 연구개발·보급
5. 정보화마을 조성운영 등 각종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6.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7. 행정통신 현대화 기획조정
8.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9. 전산·통신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
10. 정보통신공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11. 정보보안 및 사이버통합관제센터 운영
12. 개인정보보호 종합 기획·조정
13. IT기반 서비스창출 및 기획·조정
14. 전자상거래 업무 총괄 및 조정
15. IT(ICT)콘텐츠산업·IT(ICT)융복합산업 등 IT(ICT) 관련 업무 및 스마트콘텐츠 업무

제11조(글로벌투자통상국에 두는 과) ①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투자유치과·기업지원과·통상지원과·국제교류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유치과장·기업지원과장·통상 지원과장·국제교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투자유치(관광, 기업 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3. 지역투자박람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4. 첨단신산업(R&D센터, IT, NT, ET) 및 에너지산업 유치
5. 수도권 이전 및 타시도 이전기업·국내 복귀기업 유치
6. 유치(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7.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외자유치 정책개발 및 투자기반 조성
9. 국가별 외투 개별상품 개발 및 해외IR 실시
10. 그 밖에 해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2.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 및 지원자금 운영
3.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운영 지도

4. 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육성
5. 공산품 국내 판로확대 지원
6. 공공구매 확대 지원
7.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 홍보 지원
8. 창업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연구·개발과 사후관리
9.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동아리 지원
10. 산학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1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애로 해소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16. 공장입지 유도지역 및 금지구역 지정 관리
17. 국가(평화)·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입지 지정
18. 농공단지 조성관리 및 입주업체 지원
19.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사항
20.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미래도시 개발·건설, 공공기관이전, 구역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 ⑤ 통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통상 및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2.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가별 수출전략 추진 및 유통망 구축
 4. GTI국제무역박람회 개최 및 사후관리
 5. 국외 무역사무소 및 종합 무역정보망 운영·관리
 6. 무역인력 양성 및 수출입 통계 분석
 7. 수출 유관기관과의 제업무 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8. 수출관련 상담 및 실무교육 지원
 9. 그 밖에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 ⑥ 국제교류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지역정부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총괄
 2. 해외 유관기관 및 단체, 도민회 등 민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국제화 시책개발·연구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료수집
 4. 도 및 시군 국제교류 협력계획 총괄 조정

5. 국제 자매결연 업무추진 및 시군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지원
6. 그 밖에 다른 실국의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지원·협조
7. MICE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시책 개발 및 관련 업무 추진
9.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 국제회의 산업의 국외 홍보
10. 국제회의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11.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국제훈련과정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연수생 선발 및 연수과정, 교재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4. 유엔-해비타트(UN-HABITAT) 기술지원프로그램 과정 운영
15. 아시아-태평양지역 능력배양 네트워크관리 및 환경기술 과정 운영

제12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관광마케팅과·관광개발과·문화예술과·체육과·체전기획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마케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 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관광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권역별 관광종합계획 및 관광진흥시책 수립
3.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4.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5. 관광사업체(여행업) 지도·관리
6. 관광객 통계관리
7. 국제관광정보센터 및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지도·감독
8. 크루즈 유치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관광홍보·마케팅 종합계획수립 추진
10. 관광분야 국제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관광박람회·설명회·교역전 등 참가 및 마케팅, 여행사 육성
12. 동아시아 관광포럼 및 광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13. 관광분야 국제 인적교류
14. 해외관광기구와의 교류 협력
15. 관광안내시설 설치·운영

16. 관광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17.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18. 관광안내원 교육
 19. 해외 관광사무소 운영·지도
 20. 관광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21.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
 22. 문화관광축제 및 도지정 우수 지역축제의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 육성
 23. 도내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관광투자유치의 종합기획·조정 및 사업추진
 2.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및 관광휴양시설 등의 유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사후관리, 행정지원
 3. 종합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장업 관련 사무
 4. 관광사업체 지도·관리
 5. 관광지내 삭도·케도사업 지도 감독
 6. 설악·금강권 연계관광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8. 관광특구, 관광(단)지 지정승인 및 관리
 9. 평화·문화광장 조성·관리
 10. 국토정중앙지대 및 디엠제트(DMZ) 관광자원 개발
 11.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복원 등 관광자원 조성·관리
 12.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사업 추진
 13. 동계올림픽 배후 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 ⑥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조형예술 진흥 및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사(道史) 편찬 업무
 4. 박물관, 도서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 인쇄,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
 7. 영상 콤플렉스 조성

8. 컴퓨터 게임장업 관련 사무
9.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10. 국악진흥 및 공연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11. 향토문화 축제 및 지역문화 이벤트에 관한 사항
12. 향토의 열 선양사업 및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13. 지방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 지정·해제 및 보존·보수 관리
15. 향교, 사찰의 등록 및 재산관리
16. 박물관 등록 및 관리
17. 유적지,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및 충혼탑 관리
18. 문화올림픽 추진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체육진흥협회 및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3. 체육회 업무협조·지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육성
 4. 국민전선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5.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골프장, 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의 사업추진 및 시행승인, 착·준공 신고 수리, 체육시설업 등록, 회원 모집 계획 수리, 사후관리 등 추진
 7. 신고체육시설 운영 관리
 8. 체육공원 조성, 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9. 국민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10. 레저스포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대회 유치
- ⑧ 체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96회 전국체전 및 제35회 전국장애인체전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경기장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제45회 전국소년체전 개최에 관한 사항
 5. 체전 평가분석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제13조(보건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보건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경로 장애인과·여성청소년가족과·보건정책과·식품의약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및 경로장애인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보건정책과장 및 식품의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 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이재민 구호
6.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7. 보훈과 관련한 사무
8.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
9.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관리
10.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무
11. 저출산에 관한 사항
12.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13.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14.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및 주택알선
15.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 추진
16. 아동학대 예방사업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경로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2. 경로효친사상 앙양
3.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고령화 사회 대응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여가시설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 조성 및 장사문화 의식 개선
7. 장례식장에 관한 사무
8.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9.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등 지원

10.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재활 서비스 및 재활병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⑥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총괄 기획·조정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3. 여성가족연구원·(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도·감독
 4.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
 5. 여성의 지위향상 정책연구 개발
 6.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홍보
 7.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
 8.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9.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0. 성매매 예방 및 선도·보호
 11.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보호 지원
 12. 요보호여성 생활안정 지원
 13.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14.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및 관리
 15.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지역사회정착 지원 관리, 적응 프로그램 운영
 16.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및 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 운영
 18.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추진
 19. 학교폭력근절 등 교육 분위기 조성
 20.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 지도·감독
- ⑦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공공 유(U)-헬스 및 보건의료시스템 관리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지도
 4. 공중보건의사·장학의사 배치 및 운영 지도
 5. 급·만성 전염병 예방대책 및 주민교육
 6. 결핵·한센병·성병관리 및 한센협회 지도 감독
 7. 지방풍토병 관리 및 위생해충·기생충 구제와 예방대책
 8. 특수질환(희귀·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
 9. 방문보건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0.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1.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12. 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 영양, 절주, 운동,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
13. 국민건강·영양진흥 및 가족보건 교육홍보
14.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6. 특수질환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 부설의원 운영 관리

⑧ 식품의약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의약품 안전 종합대책 기획·조정
2.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
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4.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6.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7. 유통식품 수거 검사
8. 공중 및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9. 식중독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0.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1. 의·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지도 감독
12.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
13.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14.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허가, 품목허가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
15.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16.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과대광고의 지도단속
17. 무허가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1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정과·축산과·유통원예과·농업 기반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유통 원예과장·농업기반과장은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보한다.

③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지도
 3.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4. 농정사업 및 농정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5. 농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
 6. 영농조직의 육성지도 및 농어민 교육훈련, 후계자 육성
 7. 농업인단체 육성 지도
 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농특별회계 관리
 9. 농림계 특성화대학 및 자영자 양성 농고 지원
 10.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관리
 11. 농어촌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
 12.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
 13. 농어업대상제 운영
 14.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운용관리
 15. 농지조성비 부과에 관한 사항
 16.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 농업대책에 관한 사항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추진
 19. 향토산업 육성
 20.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2. 축산업 지원 대책 수립추진
 3. 양계산업 및 계열화사업 관련 업무
 4. 축산업·종축업 허가관리 및 축산기관·단체 관련 업무
 5. 한우·양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추진
 6. 낙농진흥 및 원유수급 관리
 7. 축산업 6차 산업화 업무
 8. 축산 재해 대책 업무
 9. 친환경 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 대책 수립·관리
 10.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및 산지 생태축산·초지개발 업무
 11. 사료제조업·사료성분 등록 및 사료 품질관리
 12. 꿀벌 산업 지원 대책 수립 및 브랜드화 추진

13. 동물방역 및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업무
 14. 동물복지(보호)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
 15. 동물의약품 생산지원 및 약사감시
 1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수의사회 지도·감독
 17. 축산차량등록제 운영 및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18.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
 19.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업무
 20.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21. 축산물 작업장 인허가 및 지도·감독
 22. 축산기술연구소 및 가축위생시험소 지도·감독
- ⑤ 유통원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 추진
 2. 농산물 판매대책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
 3.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
 4.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관리
 5. 농산물 시장 및 산지공판장 관리지원
 6.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
 7. 강원도 농특산물 고유상표 승인 및 사후관리
 8.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9. 농산물 안전성 관리
 10. 농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 운영 및 전통식품 관리
 11. 원예특용작물 생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12.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안정화 대책 추진
 13.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4.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원예특작분야 시설물 재해대책
 16. 기능성 양잠 및 곤충산업 육성
 17. 올림픽 식품 및 외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8. 한식세계화 관련 업무
 19. 친환경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⑥ 농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2.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3.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가소득 보전
5. 식량증산계획 수립 및 추진
6. 환경친화형 지력증진 추진
7. 농업재해 대책 추진 및 복구 지원
8. 농산물 병해충 방제 추진
9.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
10. 감자산업 활성화대책 추진
11. 밭작물 안정생산 및 공급
12. 식량작물 종자 생산·공급·관리
13. 양곡수급계획 및 수불관리
14. 정부관리 양곡 보관·가공·수송업무
15.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16. 양곡매입 및 수입양곡 관리
17.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영·관리
18. 쌀·전작물 전업농 및 농업법인 육성
19. 비료, 농약, 유류 등 영농자재 지원 및 수급 조절
20. 농업기계화 및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21. 농작물 재해보험업무 추진
22.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2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24. 비료 생산(수입) 판매업체 등록 및 생산관리
25. 농업용수 및 기반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26. 대구획경지정리 추진 및 환지계획 인가
27.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8. 수리시설 개보수 관리 추진
2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0.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31.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2. 배수개선 및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
33. 농업기반시설물 및 양수장비 관리
34. 한발대비사업 및 개간업무 추진

- 3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 36.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운영 지도·감독

제15조(녹색국에 두는 과) ① 녹색국에 산림소득과·산림관리과·환경과·수질보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산림소득과장·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여, 산림관리과장·수질보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산림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정책 총괄 조정,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조정
2. 산림·임업통계·산림공간정보시스템 운용
3. 도유림 관리계획 수립 및 경영관리
4.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운용 관리
5.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책, 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사항
6. 산림개발연구원 등 사업소 및 산림특수법인·협회 관리
7.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및 실행
8.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지원
9. 특별관리 임산물 및 임산물 지리적표시제와 생산자 조직 육성
10. 산림경영계획 및 입목벌채·굴취에 관한 사항
11. 임업정책자금 운용·관리 및 임업기술 보급·지도
12. 목질계 연료제조 및 관련 보일러 보급
13. 산림 사업용 임업 기계·장비 보급
14. 목재수급계획 수립조정 및 목재산업 육성
15. 독립가·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 육성
16.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17. 산림휴양시설, 수목원, 자생식물원, 산림박물관, 수목장림 조성관리
18. 산촌개발 및 녹색·생태관광의 개발·육성
19. 치유의 숲, 생태숲 등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20. 산림박람회 등 산림문화축제 개최
21.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22. 산림자원 관리지침 운용 및 임업진흥권역 지정·관리
23. 산림용 종묘 생산수급 및 채종림 등 관리
24. 조림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지도
25.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육성,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지원
26. 도시숲·생활림·가로수 등 녹지공간 조성·관리

27.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28.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
29. 경제림육성단지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관리
3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 ④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내 위·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2.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관리
 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4. 산림사업법인 관리 및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리
 5.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운영
 6. 산지구분 및 보전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지전용·일시사용·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해제
 8. 산지에서 의 지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
 9.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10. 채석단지 지정,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에 관한 사항
 11. 민북지역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기반시설 설치 및 실행지도
 14.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해안사방 사업
 15.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리
 16. 임도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치·운용
 17. 산림생태복원 계획수립 및 시행
 18.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예방 사업 실행 및 사업지 사후관리
 19. 산불방지대책수립 및 산불예방·진화에 관한 사항
 20. 숲길(등산로) 신규조성·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숲 사랑지도원 위촉 등 숲사랑 운동 전개
 22. 산림 무선망 구축 및 운용·관리
- ⑤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의 총괄기획·조정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환경정책 평가 및 환경정보체계(EIS) 구축·운영
 3. 녹색성장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4.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 협의

6.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7. 대기·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지도단속, 행정처분
8.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지도단속
9. 유해화학물질 및 사용업소 관리
10. 연료사용 규제, 악취, 비산먼지 등 대기보전 사무
11. 배출부과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1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13. 환경개선특별회계 총괄 관리
14. 생활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생활쓰레기 처리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6.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
17.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 및 시설물 관리
18. 야생 동·식물 관리 및 자연보호 조직육성
19. 자연학습원 운영 지도·감독
20. 자연휴식지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21.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위촉 및 관리
23.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증식
2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지원
25. 국립·도립·군립공원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자연공원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27.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8. 폐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29.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 ⑥ 수질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대책 총괄조정 및 추진
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3. 하천·호소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5. 한강·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운용
6. 한강살리기 운동 추진
7. 먹는 샘물·먹는 해양심층수 수원개발·제조업 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8. 농촌 오수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관리

9. 공중화장실·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관리
10. 상하수도 사업계획 인가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지도
11.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검토 및 협의
12. 중수도 관리
13. 간이상수도 설치 및 시설관리
14. 지하수 보전구역 관리·지정
15.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16.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17. 지하수 개발·이용관리
18. 토양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오염원 관리
19.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오염관리

제16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지역도시과·건축과·토지 과·도로철도과·교통과·치수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도시과장·건축과장·토지과장·도로철도과장·교통과장·치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역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토지수용 관련 공공용지의 취득 보상
3. 종합건설업체 등록·관리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 사항
6.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조정
7.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추진
8. 전원 신도시건설 관련 사항
9.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및 환지계획 관련 사항
10. 도시공원 조성·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11. 택지개발에 관련된 사무
12.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
1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4. 토지 형질변경 인가
15.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16.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7.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 사항
18.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사항
19. 건설기술정보 및 신기술·신공법 관련 사항
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영
21.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토지이용계획 완화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축행정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
2. 건축위원회 운영(사전승인, 분쟁, 징계심의)
3. 건축사사무소 행정처분 등 관리 감독
4.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사항
5. 도시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사업체에 관한 사항
6.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경관주택 지원사업 추진
8.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추진
10. 공공건축물 및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11. 옥외광고문화 개선 및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정비
12.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허가 및 행정처분
13. 옥외광고업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경관형성계획 수립·시행
15.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16. 노후주택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지재생)에 관한 사항
18.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관리사 등록 및 행정처분 사항
19.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0. 재해주택 복구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1.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2.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에 관한 업무
23. 한옥건축 사업 지원
24.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한옥전문위원회 운영
25.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지원·추진

26. 공동주택(분양, 임대) 관리 업무
27. 건축관련 행정심판·소송 및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
28. 임대주택건설 공급 및 지원업무(행복주택)
29. 저소득가구 주택바우처·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⑤ 토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관리 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부동산 투기대책 수립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
 3.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관리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
 5.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
 6. 개발이익환수(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7.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
 8. 위성측량 및 측량기준점 설치·관리
 9.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수행자 관련 업무
 10. 지적복구 및 토지이동 조사·등록에 관한 사항
 11. 지적재조사 및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
 1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
 13. 측량업 등록 관리
 14. 지적전산 정보 관리 및 운영
 15. 도로명 주소에 관한 업무
 16. 국가 기초구역 설정에 관한 사무
 17.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
 18.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9. 생활지리, 3차원공간정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 업무
 20. 도유지 규모화(집단화)·의미화 업무 추진
 21. 투자유치 대상 토지 국·공유재산 양여·교환업무 지원
 22. 투자대상지 및 개발가능 입지 선정 조사분석 제공
 23. 국·공유지 및 대규모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 ⑥ 도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도내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5. 군도 노선지정 및 변경인가 지정(변경인가 포함) 및 농어촌도로 기본 계획 변경 승인
6. 시군 보조사업의 설계심사 및 지도 감독
7. 도로의 개설 및 포장, 유지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지도·감독
9. 지방도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10. 국·공유재산(도로) 관리
11. 도로 위험시설물 및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행
12. 위임국도 유지보수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13.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 인·허가에 관한 사항
14. 지방도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15. 국·공유재산(도로) 관리
16. 도로·교량재해,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피해복구
17. 도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도내 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 ⑦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물류정책의 종합기획·조정
 2. 도시교통정비계획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3. 자동차운수사업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
 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터미널) 인·면허와 등록에 관한 사무
 5. 자동차관리사업·창고업 등록 및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6.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
 7. 주차장 관리
 8.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무
 10.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에 관한 사무
 11. 물류단지 지정 및 준공관련 사항
 12.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13. 지역 물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수립
 14. 강원 내륙물류기지 건설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원
 15. 물류단지 지정 및 국제 물류주선업 등록
 16. 화물·택시운송사업 인허가 및 관리
 17.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등록 및 화물운송 파업 관리
 18. 희망택시사업 운영

19.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⑧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2. 하천관리
3. 댐 관련 현안대책 추진
4.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댐 관련 업무 협조·지원
5.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6.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7. 하천분야 국·공유 재산관리
8. 골재수급계획 수립
9. 하천재해예방사업·생태하천 및 고향의 강 추진
10.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11.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동계올림픽본부에 두는 과) ① 동계올림픽본부에 총괄기획과·특구 육성과·시설관리과·설상시설과·빙상시설과를 둔다.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괄기획과장·특구육성과장·시설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설상시설과장·빙상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종합 기획 및 조정
3.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및 예산·회계
4. 국제올림픽위원회(IOC)·중앙부처·유관기관 협조사항
5.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관련 법령·제도 정비
6. 드림프로그램 기획·운영
7. 동계올림픽대회 종목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8. 동계올림픽대회 종목 선수육성 지원 및 국제스포츠 교류협력 추진
9.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10. 그 밖에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11.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특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계올림픽 특구정책의 종합 기획·조정
2.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동계올림픽 특구의 지정(해제) 총괄
4.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5. 특구 관련 내외국인 투자 및 거주 유도
6. 그 밖에 특구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⑤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계올림픽시설 기획·조정 관리
2. 대회관련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3. 동계올림픽시설 총사업비 확보 및 관리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토지·건물 재산관리
5. 건설추진단 주요시책 및 업무보고 등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6.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추진
7. 올림픽 플라자 조성 및 기존 경기장 시설보완 추진

⑥ 설상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설상경기장 건설공사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2. 중봉알파인경기장, 슬라이딩센터,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사업 추진
3. 진입도로 건설사업 추진 및 추가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 건설사업 추진
4. 스노우보드경기장 건설에 관한 사항
5. 설상경기장 설비업무에 관한 사항
6. 생태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⑦ 빙상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빙상경기장 건설 총괄 지원에 관한 사항
2. 빙상단지 조성, 아이스하키 I·II,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쇼트트랙, 컬링경기장 건설사업 추진
3. 공유재산 관리, 총사업비 관리 등
4. 동계올림픽시설 건설관련 전기·기계·통신 등 설비업무 총괄·관리

제18조(소방안전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구조과·종합상황실·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과장·방호구조과장·종합상황실장·특수구조단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소방공무원 채용·근무성적 평정
3.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환경 개선

4. 소방공무원 상훈,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5. 소방행정 종합기획
 6. 사회보조요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체력관리 및 복무관리
 8. 소방공무원 징계 및 고충 심사
 9.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평가 및 제도 운영
 10. 소방관서 기구·정원 관리 등 소방조직 관리
 11. 소방관서 설치·운영
 12. 소방력 확충 및 조정
 13. 소방예산 편성·관리 및 집행, 중장기 소방재정 운영
 14. 소방 예산·결산, 소방재정 확보 및 운영
 15.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청사 신·증축에 관한 사항
 17.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관리
 18. 그 밖에 본부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업무 기획 및 지도관리
 2. 화재원인의 분석통계 및 화재예방 홍보
 3.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설치·유지관리
 4.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화재진압훈련 및 진압기법 개발
 5.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캠프 운용
 6. 소방설비업 등록,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허가
 7.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8. 구조대책 수립 및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9.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원,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10.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운영·평가 및 긴급구조종합훈련 운영
 11. 내수면 등 수난구호 종합대책 수립·운영
 12.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시행
 13. 소방구급 업무계획 및 운영관리
 14. 구급기법 연구지도 및 의료정보 수집운영
 15. 구급장비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
 16.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
 17. 특수재난 소방대책 강구 및 인명 구급·구호

18. 화재원인조사 및 피해조사, 화재조사 업무지도
19. 인명구조·피난유도 및 화재예방·진압
20. 화재특별경계근무 등에 관한 사항
21. 전시대비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2. 개인안전장비 확충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23.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지도
24. 소방 특별사법경찰 운영·지도
- 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신고접수·상황 관제 및 주요 상황업무 통계분석
 2.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전파
 3. 응급환자 안내·상담 및 지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4.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및 통계분석
 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6. 긴급구조시스템 운영관리
 7. 소방전용망(MSPP) 및 전용회선(119회선 포함) 운영관리
 8. 지령방송 및 유·무선통신시스템 운영관리
 9. CCTV 및 차량정보 단말기(MDT) 운영관리
 10. 소방 GIS 및 DB 운영관리
 11. 내·외부 시스템 연계관리, 소방정보화 사업 추진
 12.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13.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및 장비 유지보수
 14. 119위치정보조회 시스템 운영관리
 15. 119신고확대서비스 운영 및 통계분석
 16. 위성중계통신망(SNG차량 포함) 운영관리
 17. 소방관서 통합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18. 재난상황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19. 계절별 재난상황 전망 분석
 20. 재난현장 촬영 및 언론 브리핑
- ⑥ 특수구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해·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지원
 2. 산악·수난·항공구조대의 운영
 3. 생화학·테러구조, 설상구조에 관한 사항
 4. 공중 소방지휘·통제, 소방력 항공 수송

5. 특수구조계획·대응·훈련 지도 및 지원
6. 특수구조장비 배치·운용
7. 구조전 운용 및 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강원도농업기술원

제19조(원장)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강원도농업기술원에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을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1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문서, 인사 및 공인관수
2. 예산, 회계, 물품조달 및 재산·청사관리
3.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2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시험장)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환경농업연구과와 특화작목시험장으로 강원도농업기술원농식품연구소(이하 “농식품연구소”라 한다)·강원도농업기술원옥수수연구소(이하 “옥수수연구소”라 한다)·강원도농업기술원특화작물연구소(이하 “특화작물연구소”라 한다)·강원도농업기술원산채연구소(이하 “산채연구소”라 한다)·강원도농업기술원인삼약초연구소(이하 “인삼약초연구소”라 한다)를 두며 각 과장 및 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시험 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성과관리, 예산 총괄
3. 연구직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수립 및 시행
4.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화에 관한 조사연구
5. 농가 소득증대 및 유통구조개선 연구
6. 식량·특용작물의 신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7. 식량·특용작물의 고품질 재배법 연구
8. 연구개발성과 현장접목 실용화사업 추진
9. 영농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사업화
10. 6차 산업화 모델개발 및 소득화 연구
11. 대외 농업기술 교류 및 산학연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2. 소득 유망 원예작물의 우량종묘·종자 생산
3. 원예작물 재배법 개선 연구
4. 원예작물 증식 및 생산성 증대 연구
5. 신소득 자원 발굴 및 특산화 연구
6. 유망 수출작목개발 및 품질향상 연구
7. FTA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8.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적응성 검정 연구
9. 6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 특산물 산업화 추진
10.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관한 사항

⑤ 환경농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의 이화학성 검정 및 비옥도 증진 연구
2. 농업환경 보존 및 농업기상 연구
3. 토양, 비료, 친환경자재 등 민원분석 사무
4. 도내 농업용수 및 농업환경 변화 모니터링
5.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연구
6. 농업환경 보존 및 지력증진 기술개발 연구
7. 재배작물 시비량 설정 연구
8. 병해충 발생예찰과 방제기술 개발
9. 생물자원이용 친환경농자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
10. 천적·익충 이용 곤충 산업화 연구
11. 기후변화 대응 돌발 병해충·바이러스 예찰망 구축
12. 재배작물 주요 병해충조사 및 농약등록 시험연구
13.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소득화 기술 연구
14. 버섯 고품질·생력화 재배기술 개발
15. 그 밖에 작물보호 관련 진단 및 방제법 처방 민원사무

⑥ 농식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도 농식품 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2.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연구
3. 강원도 전통 발효기술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연구
4. 농식품 성분 및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
5. 강원도 식물자원의 고도이용 기술 개발
6. 강원도 농식품 부가가치 증대에 관한 연구
7. 농산물 저장가공업체 현장기술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⑦ 옥수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옥수수 유전자원 수집·증식·관리
2. 옥수수 용도별 신품종 육성 연구
3. 옥수수 기본식물·원원종·보급종 종자 생산
4. 옥수수 보급종(F1) 종자생산 기술개발
5. 옥수수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6. 옥수수 기능성을 활용한 산업화 연구
7. 옥수수 현장 실용화기술개발 연구
8. 옥수수 동계 해외 세대축진 및 증식
9. 옥수수 국내외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⑧ 특화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류의 우량계통 선발 및 신품종육성
2. 서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지보존 관리
3. 서류 주년생산 작형 및 재배 안전성 기술개발
4. 기후변화 대응 서류 작황예측 및 병해충 방제 연구
5. 감자 신품종 채종단계별 종서생산 및 농가실증 보급
6. 수출용 서류 품종 육성 및 평가
7. 육성품종 바이러스 검정 및 진단기술 개발
8. 동해안지역 신소득 작목 재배기술 개발
9. 우량종서·종묘 생산보급 및 기술지원
10.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1.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

⑨ 산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채의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2. 산채 유전자원 수집 및 유지보존 관리
3. 산채 재배법 개선 기술개발
4. 산채 대량증식 생산기술 연구
5. 산채 신작목 발굴 및 산업화 연구
6. 산채류 산지농법 실용화 연구
7. 고원지대 신소득 작목개발 및 특산화 연구
8. 고원지대 유용 유전자원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9. 우량종자종묘 생산보급 및 기술지원
9.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0.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

⑩ 인삼약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삼 신품종육성 및 우량종자·종묘 생산 연구
2. 인삼 안정생산 및 재배기술 개발
3. 인삼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
4. 약초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종묘 생산 연구
5. 약초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재배법 개선 연구
6. 새로운 약초자원 소득화 연구
7. 인삼·약초 농가 현장애로기술 개발
8. 인삼·약초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관리
9.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0.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제23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① 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기술보급과·생활자원과를 두며, 지원기획과장·기술보급과장·생활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예산편성 및 평가
2.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 4H) 육성 및 지원
3.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관리 지원
4.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5.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관리
6. 도시민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
7. 농촌진흥사업 홍보

8.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9.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원
2. 기상재해에 관한 기술지원
3. 작물보호 및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지원
4. 생력재배 새기술 보급
5. 주요농작물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6. 친환경 보전형 농업기술지원
7.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원
8. 축산기술 및 잠업경영 지원
9. 소득원 개발 및 특화농업 기술지원
10. 영농현장 기술지원

④ 생활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농촌 자원 소득화 지원
2. 농식품 가공기반 조성 및 창업활동 지원
3. 농업인 건강 및 농작업 안전관리
4. 농촌노인 생활 활력화 및 식생활 개선
5.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소비자 교육

제24조(미래농업교육원) ① 미래농업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농업교육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미래농업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사·장비·물품·재산의 유지 관리
3. 미래농업 교육 및 영농기술 교육
4. 농기계훈련 및 농기계정비공과 등 직업훈련
5. 교육용 각종실습장 운영
6. 그 밖에 농촌발전 시책상 필요한 교육

제2절 강원도인재개발원

제25조(원장)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강원도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및 교육 연구실을 두며, 각 과장 및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인사·보안·문서 및 관인관리
2. 직원복무 및 복리후생 관리
3. 예산·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4. 청사·물품 및 재산관리
5. 교육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
6. 교육생 후생·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및 행정사료관 운영관리
8. 방송실 및 교육기자재 관리
9.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2. 교육생 선발등록 및 근태·학적 관리
3. 강사 초빙·안내
4. 교육교재 편찬·수급
5. 사이버 및 정보화교육과정 운영
6. 사이버교육계획 및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운영
7.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8. 홈페이지 및 교육행정시스템 운영·관리
9. 의무실 운영

④ 교육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2. 새로운 교육기법의 도입·연구
3.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4. 교과목 편성 및 교육교재의 개발
5. 교육훈련 평가분석·설문 및 성과 측정기법 개발
6. 지방공무원의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
7. 액션러닝 등 문제 해결형 교육기법의 진행
8. 우수강사 풀(Pool)구축 및 관리

9.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도민 자치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 교육
11. 찾아가는 도민 현장교육 및 각급 기관 단체 직무 관련 교육
12. 도민강좌 및 도민 사이버 교육
13. 시범교육과정 및 위탁교육과정 운영
14. 그 밖에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제3절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제27조(원장)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보건연구부·환경연구부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직원관리 및 공인관수
2. 예산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건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분야 연구·검사계획 수립
2. 검사결과의 통보 및 행정처분·지도
3.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보건분야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분야 연구·검사계획 수립
2. 검사결과의 통보 및 행정처분·지도
3.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환경분야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제29조(보건·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보건연구부에 미생물과(科)·질병 조사과(科)·감염역학과(科)·식품분석과(科)·약품화학과(科)를 두며, 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科)·먹는물분석과(科)·대기공학과(科)·대기평가과(科)·생태환경과(科)·토양화학과(科)·산업폐수과(科)·환경안전과(科)를 둔다.

② 미생물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질병조사과장, 감염역학과장·식품분석과장·약품화학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생태환경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계조사과장·먹는물분석과장·대기공학과장·대기평가과장·생태환경과장·토양화학과장·산업폐수과장·환경안전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연구부 소관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확인검사
3. 임질, 매독 등 성병 검사
4.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간염 등 바이러스질환 검사
5. 브루셀라증 진단검사
6. 위 질환의 유행 감시와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7. 식품, 의약품 중 미생물 검사 및 위해성 조사
8.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시험 및 조사연구
9. 기생충감염퇴치를 위한 실험실적 진단 및 조사
10. 결핵 감염 진단 검사(IGRA)
11. 시군보건소 검사업무 교육 및 기술지도
12.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질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플루엔자 유행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
2. 바이러스성호흡기질환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
3. 세균성호흡기질환의 실험실적 감시 및 유행조사
4.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렘토스피라증 등 열성질환 진단 검사
5. 말라리아 유행예측 조사(매개모기, 모기의 원충 검사)
6. 말라리아 진단 검사(혈액)
7.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매개모기, 돼지혈청)
8. 생물테러 대응 관리 사업
9.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운영 및 장비 관리
10. 기후변화매개체(진드기 등) 감시 사업
11. 해외유입감염병에 관한 유행 감시 및 진단검사
12.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및 교육
13. 진드기매개질환(SFTS, 라임병) 진단검사
14. 보건소 매개체 질환 업무 교육 지도
15. 그 밖에 질병조사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감염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인성·식품매개성질환 집단환자 발생 역학조사

2. 세균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
3. 바이러스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
4. 세균성병원체의 분자유전학적 감시망 운영
5. 노로바이러스의 분자유전학적 감시망 운영
6. 무균성수막염 등 장내바이러스 질환진단 및 유행 조사
7.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
8. 병원성비브리오팀 분포 및 발생 예측에 관한 조사 연구
9.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10. 보건소 역학조사 업무 교육 지도
11. 보건소 실험실진단업무 교육 지도
12. 감염병 통계자료 조회
13. 그 밖에 감염의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 ⑥ 식품분석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등의 규격 기준 검사
 2. 식품첨가물 검사
 3. 식품, 식품재료 등의 성분 분석
 4.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및 조사 연구
 5. 도지사품질보증 농수산물 품질검사
 6. 가공식품 중 잔류농약 등의 검사
 7. 식품 중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
 8.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실태에 관한 조사
 9. 식품 및 식품재료에 대한 생리활성과 기능성에 관한 연구
 10. 식품 제조업소 및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 등 기술지원
 11. 국민의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100대 식품)
 12. 식품 중 방사능오염물질 검사
 13. 영양표시제 시행에 따른 영양성분함량 검사
 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어린이기호식품 등 영양표시제 검사
 15. 식품안전정보네트워크시스템 및 식품품질 보증체계 구축 업무
 16.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 검사
 17. 그 밖에 식품분석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 ⑦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구 및 용기·포장 검사
 2. 생약 등의 규격기준 검사

3. 의약품,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검정
 4. 화장품 및 위생용품 검사
 5. 방역소독약품 검사
 6. 생약 등의 성분 분석
 7. 농산물, 생약 중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8. 수산물 및 축산물 중 유해물질 검사
 9. 의약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
 10. 의약품 등의 유해화학물질 검사
 11. 수출·입 의약품 등 검사
 12. 의약품 등의 신종유해물질 조사·분석
 13.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
 14. 의약품안전정보네트워크시스템 및 의약품품질 보증체계 구축 업무
 15. 기타 소관업무 분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개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6. 그 밖에 약품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 ⑧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하천·호소의 수질검사 및 수질측정망 운영
 3.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4. 하천, 호소의 저질에 관한 오염도 검사
 5. 광산지역 갭내수 수질 오염도 검사
 6. 양어장 배출수 수질오염도 검사
 7. 수계유역관리 오염원 조사 및 영향평가
 8. 수환경의 양적평가를 위한 하천유량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9. 수질오염총량 관련 기획 및 연구
 10.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조사
 11. GIS 구축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12. 수질분야 국가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13. 하천, 호소에 대한 조류예보제 및 수생태조사 및 평가
 14.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산간계곡수 조사
 15. 오염우심 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감시
 16.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의 수환경조사 및 관리 방안
 1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⑨ 먹는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2. 전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3. 지하수(먹는물) 수질검사
4. 먹는샘물원수 및 제품수,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
5.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6. 먹는물 공동시설(샘터수, 약수) 수질검사
7. 민간합동 수질안전성 확인검사
8. 저수조, 옥내급수 등 수돗물 오염 수질조사
9. 지하수 국가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10. 수돗물 정수처리용 수처리제 등 규격기준 검사
11. 먹는물분야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12. 정수처리시설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13. 먹는물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14. 지하수 오염관련 수질모니터링 업무
15. 그 밖에 먹는물 분석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⑩ 대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등의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
2. 사업장 등에 대한 소음도 및 진동도 검사
3. 악취배출시설 등의 악취검사
4.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비산분진 검사
5. 유통 유류 중 유황분석
6. 대기오염방지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7.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8. 악취제거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9. 소음도와 진동도에 관한 조사 연구
10.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11.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12. 대기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및 기술지도
13. 미량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연구
14. 산림 대기질 등에 대한 조사·연구
15.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악취검사 지정 기관 운영
16. 환경 기동반 운영
17. 그 밖에 대기공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⑪ 대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2.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오염도 검사
3.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의 관리 및 운영
4. 대기질 중 중금속측정망의 관리 및 운영
5. 강수의 산성도 및 성분에 관한 조사
6.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경보제 운영
7. 도시 대기오염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8. 대기오염 예측과 관리모델 개발 및 운영
9. 대기오염물질의 수송 등에 관한 조사·연구
10.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저감방안 조사·연구
11. 실내공기질 관리인 교육 및 기술지도
12. 기후변화 관련 조사·연구
13. 온실가스 측정기관 운영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14. 동계올림픽 개최지 대기질 조사
15. 올림픽 개최 경기장 및 숙박시설 공기질 조사
16. 그 밖에 대기평가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⑫ 생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분야 수질시료에 대한 미생물검사
2. 폐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검사
3.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수질검사
4. 수질과 먹는물 분야 중 미생물에 관한 국가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5. 수질분야 중 생태독성에 관한 국가측정 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6. 하수 및 분뇨처리장 중 미생물처리에 따른 조사 연구
7. 미생물처리방법에 의한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8. 생태독성실험에 대한 조사연구
9.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 및 영향에 관한 평가
10. 지하수(생활·농업·공업용수) 수질검사
11. 목욕장 및 수영장 수질검사
1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13. 그 밖에 생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⑬ 토양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성분 및 유해물질 검사

2. 토양오염도 검사
3.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4. 토양오염 실태조사
5.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6. 토양, 폐기물분야 정도관리 수행
7.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8. 폐기물과 토양 중 벤조(a)피렌 분석
9. 폐기물자원재생 및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10. 폐기물이 토양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11. 그 밖에 토양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⑭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수질검사
2.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3.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4.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
5. 정화조 수질검사
6. 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7.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
8.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검사정 수질검사
9. 공단배수 측정망 운영
10. 하수 및 분뇨처리장 처리효율개선에 관한 연구
11. 폐수시설의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12. 오·폐수 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13.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 및 저감방안 조사·연구
14. 배출시설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
15. 그 밖에 산업폐수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⑮ 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석면 분석
2.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3. 학교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4.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시설 등 기타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5.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검사
6. 어린이놀이터시설 바닥재 오염도검사

7. 석면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8. 환경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오염도검사 및 조사연구
9.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관리법에 따른 검사
10.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평가업무
11. 그 밖에 환경안전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제30조(지원의 설치) 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동부지원(이하 "동부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동부지원에 지원장을 두며, 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서무·관인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예산·물품·장비 및 청사관리
3. 먹는 물 수질검사
4. 식품, 식품용기·포장·기구제품 등의 검사
5. 그 밖에 자체 처리가 가능한 시험검사

제31조(관할구역 등)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부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절 강원도소방학교

제32조(학교장) 강원도소방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강원도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사·징계·보안에 관한 사항
3.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문서·상훈 및 공인·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훈련·체력검정, 당직·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6.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8. 태백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체험교육 운영지원
-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평가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문제출제, 교육생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후생 및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6. 교수단 교육·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특수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소방서

제34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5조(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 ① 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방호구조과·현장대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서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행정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공유 재산 및 장비·물품의 수급관리
5. 소방통신, 전산망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집행 운영
7. 그 밖에 소방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업무 지도 감독
2. 소방관련 홍보활동
3. 소방민원사무 처리
4.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완공 지도 감독

④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지도 감독

2. 의용소방대 등 소방 보조조직 운영관리
3.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에 관한 사항
7.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⑤ 현장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난시 현장대응 지휘
2. 소방자료조사 수집 및 활용
3. 화재예방 및 홍보·지원·단속
4. 출동대 편성·화재진압·구급·구조업무 및 현장조사·보존
5.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6.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36조(관할인구 5만 이상 15만 미만의 소방서) ① 관할인구 5만 이상 15 만 미만 소방서에 소방행정과·방호구조과·현장대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서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지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행정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공유 재산 및 장비·물품의 수급 관리
5. 소방통신, 전산망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집행 운영
7. 그 밖에 소방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업무 지도 감독
2. 소방관련 홍보활동
3. 소방민원사무 처리
4.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완공 지도 감독
6.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지도 감독
7. 의용소방대 등 소방 보조조직 운영관리

8.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9.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구조구급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에 관한 사항
12.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④ 현장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난시 현장대응 지휘
2. 소방자료조사 수집 및 활용
3. 화재예방 및 홍보·지원·단속
4. 출동대 편성·화재진압·구급·구조업무 및 현장조사·보존
5.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 등의 운용 및 관리
6.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7.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37조(관할인구 5만 미만의 소방서) ① 관할인구 5만 미만 소방서에 소방 행정과·방호구조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을 보한다.

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서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지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행정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공유 재산 및 장비·물품의 수급관리
5. 소방통신, 전산망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집행 운영
7. 그 밖에 소방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업무 지도 감독
2. 소방관련 홍보활동
3. 소방민원사무 처리
4.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완공 지도 감독
6.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지도 감독
7. 의용소방대 등 소방 보조조직 운영관리

8.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9.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구조구급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에 관한 사항
12.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4. 각종 재난시 현장대응 지휘
15. 소방자료조사 수집 및 활용
16. 화재예방 및 홍보·지원·단속
17. 출동대편성·화재진압·구급·구조업무 및 현장조사·보존
18.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 등의 운용 및 관리
19.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20.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38조(119안전센터의 설치)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 ③ 안전센터에 안전센터장을 두며, 안전센터장은 지방소방경으로 보한다.
- ④ 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
2. 화재예방 및 계몽·지원·단속
3. 출동대 편성·화재진압·구급업무 및 화재현장 조사·보존
4. 소방조사 및 「소방기본법」 위반사항 단속
5. 진압장비 및 기자재 등의 운용 및 관리
6.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관련 유관기관 협조
7. 구조업무 지원 및 도급경비 집행
8.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39조(119구조대의 설치)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둔다.

- ②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 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지방소방경으로 한다.

- 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구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사고 및 재난시 인명구조
 2. 구조장비의 유지관리
 3.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원
 4.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구조대와의 협조체제 유지
 5. 기타 소방서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6절 강원도립대학

제40조(하부조직) ① 강원도립대학에 교학과 및 사무국을 둔다.

② 교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정원, 교원·학생정원 및 학과 설치·폐지, 제 시험 관리
2.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강사 초청에 관한 사항
3. 학적관리(휴학, 복학, 제적, 전과, 등록)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점 등 성적관리·학사징계 및 학적조화·제증명 발급
5.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6. 학생 상벌·집회·행사 및 간행물 지도 감독
7. 학생 체육행사 지원 및 병무에 관한 사항
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9. 학생 해외유학·연수 및 여행에 관한 사항
10. 학생취업·부업 및 진로지도
11. 학생저축 및 금고관리
12. 보건·기숙사·학생회관 관리
13. 신입생 입시관련 사항
14. 대학의 대외홍보
15. 학과 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
16. 그 밖에 학적·학생복지 및 교무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제반 규정의 개정·폐지와 도의회 관련 업무
3. 관인 관수 및 문서관리, 보안 및 통계업무

4. 비상계획, 민방위, 예비군에 관한 업무
5. 사무직원 및 기성회직원 인사관리
6. 급여·연금·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세입세출의 유가증권 출납
8. 학술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 관리
9. 시설물의 영선 및 유지관리
10.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11. 각종 물품의 수급 및 차량 운영·관리
12. 실험실습관리위원회 운영
13.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수급 관리
14. 현장실습 및 산업체 위탁교육 관련 사항
15. 실험실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실습선 기본운영계획 수립
17. 실습선에 관한 사항
18.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9. 해기품질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0. 해기품질 관련 위원회의 운영
21. 그 밖에 실험실습과 관련한 사항
22. 그 밖에 대학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1조(부속기관 및 특수법인) ① 강원도립대학의 부속기관으로 종합정보 관과 기숙사를 두고, 부속연구소로 학생생활연구소를 둔다.

② 강원도립대학에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둔다.

③ 특수법인 및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학칙으로 정한다.

제4장 출장소

제1절 강원도환동해본부

제42조(본부장)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3조(하부조직) ① 강원도환동해본부에 기획총괄과, 수산정책과, 어업지원과, 해운항만과를 둔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수산정책과장·어업지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해운항만과장은 지방

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동해본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
3. 예산·경리 및 물품조달관리
4. 6급이하 수산직공무원 임용
5. 관할구역안의 6급이하 시·군 수산직공무원 조정
6. 수산정책 종합·기획 조정
7. 수산단체 지도·감독
8. 어촌지역 경제진흥대책
9. 관할구역안 동향관리
10. 관할구역안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생산 및 어업구조 조정
2. 어장종합이용개발 및 인·허가 처분
3. 어업기본통계·조사
4. 어업분쟁 조정 및 어구피해 예방
5. 어구·어업개발 및 어업제도 개선
6. 해양과학 기술산업 육성
7. 연안경관형성 종합기획·조정
8. 해양 관련 어촌종합개발
9. 수산시설계획 수립 및 집행
10. 인공어초시설 및 시험어초 개발
11. 어항시설·사용허가·사후관리 및 감독
12. 수산증·양식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3.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운영 지도·감독
14. 수산물 유통조사 및 판매촉진
15.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추진관리 및 가공업체 육성관리
16. 수산물특산물 전통식품 발굴 및 품질인증 지도
17.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단속
18. 마을어장 목장화 및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19. 수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⑤ 어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선등록 및 어선세력조사 지도
2. 노후어선 대체사업 및 어로시설사업 집행 사후관리 지도
3. 낚시어선 운영 관리지도
4. 범칙어선 행정처분
5. 재해 및 해난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6. 어선안전·월선조업 예방 및 동해어로보호본부 운영
7. 어업질서 확립 종합대책수립
8.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지도
9.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건처리
10. 한·일 어업협정 지도 및 위반어선 사건 처리
11. 해양수산분야 국제교류협력
12. 어업인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13. 자율관리어업 육성
14. 연구교습어업 및 시험사업 운영
15. 적조 및 해파리 예찰 관리
16.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 등

⑥ 해운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승인·시행
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승인·시행
3. 연안관리 및 오염실태 조사 조치
4.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
5. 매립면허 및 공사실시계획·준공인가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7. 항만시설 및 관리
8. 연안어장 및 항·포구 환경정화
9. 연안어장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10. 어장환경조사 및 해역 지정·관리
1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추진
12. 해양관광 진흥대책 추진
13. 해양 레포츠 및 어촌민속문화·축제 지원·관리
14. 해양심층수 관련법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5. 항로개척 및 국제교류에 관한사항

16. 해운(크루즈) 및 물류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17. 북극항로 시대 대비 전진기지 육성 추진
18. 해변운영 및 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9. 속초 및 삼척 항만관리사무소 운영
20. 그 밖에 해운항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장 사업소

제1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제44조(원장)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개발부를 두며, 연구개발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가족·복지 정책개발
3.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지원
5. 주요정책의 성 평등적 관점에 따른 분석·평가
6. 성 평등적 관점에서의 정책 연구
7. 여성·가족·복지 정책포럼 개최 및 전국여성정책 네트워크 협력사업
8. 그 밖에 여성·가족 발전에 필요한 연구

제2절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제46조(원장)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62조에 따라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② 지소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장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사·장비·물품·재산의 유지관리
3. 감자 우량종서의 생산 보급
4. 채종포산 종서의 후대 검정
5. 원종서 생산 업무
6. 그 밖에 원종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8조(관할구역 등)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 역은 별표 5와 같다.

제3절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제49조(소장)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 구관으로 보한다.

제50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에 방역과·질병진단과·축산식 품검사과를 두며, 방역과장·질병진단과장·축산식품검사와장은 지방수 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복무·문서·보안 및 공인관수
 2.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3. 차량유지 관리 및 물품관리·조달
 4. 가축의 방역업무 기획·조정
 5. 가축질병의 방역과 전염병 검진
 6. 해외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
 7. 가축질병 예찰 및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8.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및 질병 교육
 9. 착유우의 검사
 10. 종돈장, 종계장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11. 가축전염병 및 위생관련 시험·연구
 12. 마을단위 방역등급제 관련사무
 13. 산학연 공동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14. 중앙과의 연락시험사업
 15.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시험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③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 및 어류 질병진단과 지방병 조사

2. 각종 병리시험, 미생물, 면역, 유전공학적 검사
3. 가축의 질병 진단 및 혈청검사
4. 야생동물 치료 및 질병조사
5. 가축질병 시험연구 및 중앙과의 연락시험
6. 시험동물 관리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7.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검사 및 예찰
8. 생물학적3등급밀폐실험실(BSL-3) 운영
9.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예찰 검사
10.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11. 연구사업선정평가협의회 운영
12.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13. 그 밖에 각종 실험 및 신종질병에 관한 업무

④ 축산식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검사 업무 기획·조정
2. 도축검사 및 도축장 위생관리 지도
3. 부정축산물의 감정 및 지도
4. 축산물작업장 위생 감시 및 지도
5. 식육 및 식용란의 검사
6. HACCP 지정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7.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에 대한 위생교육
8. 축산물내 미생물·항생제 내성균검사
9. 식육·원유·가공품 등 축산물 검사
10. 축산물의 성분규격 검사
11. 축산물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정밀정량분석검사
12. 강원도 농수산 특산물 품질보증품 검사
13. 한우유전자 및 쇠고기이력제 DNA검사
14. 중앙과의 연락시험사업
15. 그 밖에 축산물 위생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제51조(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69조에 따라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②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③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수의연구원 또는 지방수의사무 관으로 보한다.

④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⑤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무,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사·물품·장비·시설물·재산의 유지 관리
3. 가축질병 방역 및 법정전염병 검진
4. 가축위생관리 및 교육 지도
5. 가축질병 예찰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6. 유방염 방제 및 착유우(양) 검사
7. 가축 혈청검사 및 질병진단
8. 종축 질병관리 및 위생지도
9. 도축검사 및 도축장 위생관리
10. 식육, 원유, 알 및 가공품 등 축산물 검사
11.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검사 및 미생물 검사
12. 부정축산물의 감정 및 지도
13.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1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업무
15. 축산물 청정농장 인증
16.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제4절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제52조(원장)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3조(하부조직) ①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 관리운영과 및 임업연구실을 두며, 관리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임업연구실장은 지방녹지연구관 으로 보한다.

②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유림 경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유림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3. 임산부산물·개발행위 지장임목 및 사전 승인된 임산물의 취득·처분 및 매각
4. 도유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및 기간갱신, 재허가, 반지처분
5. 도유림내 휴양림 등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
6. 강원숲체험장 조성·운영·관리
7.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의 운영·관리

8. 도유림내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재해예방 등 산림사업 시행 및 관리

③ 임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환경 및 산림생태계에 관한 연구
2. 우량 종·묘 생산 및 기술보급 지도
3. 임산 버섯·산약초 등 유용임산물 재배기술 연구
4. 강원지역 휘귀·특산식물 보존 및 복원
5. 임산 소득자원 개발연구 및 기술지도
6.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
7. 강원도 대표수종 발굴 및 증식 보급
8.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연구
9. 임업시험림 조성 및 관리
10. 기타 산림소득원 개발 등 연구에 관한 사항

제54조(지원의 설치) ① 조례 제73조에 따라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동부지원(이하 “동부 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동부지원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51-100에 둔다.

③ 동부지원에 지원장을 두며, 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예산회계 관리
2.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운영
3.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3. 탐방객의 체험학습 및 자연관찰 활동지원
4. 백두대간 자생식물 생태조사 및 모니터링
5. 고산지대 특용수종 개발 및 보급
6. 생태복원 기법 등 각종 시험연구사업
8. 소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유지
9. 강릉·동해·태백·삼척·영월·평창·정선 지역의 도유림 관리 및 산림사업 추진

제5절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제55조(소장)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6조(하부조직) 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도로보수과를 두며,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공인, 민원, 보안, 복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3. 소속직원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4.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운영
5. 국·도비 예산집행 및 회계 관리
6. 각종 공사계약 체결 및 지도 감독
7.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및 사법처리
8. 과적차량 고정 검문소 운영 등

③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보수 유지 및 시설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포장공사 측량·설계·시공 및 도로유지 보수 관리
3. 교통안전시설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4.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5. 재해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6. 지방도 수로원 관리 및 도로유지 기동보수반 운영
7.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수급 및 저장관리
8.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기술지도
9. 장비의 정비 및 정비공장 운영 등

제57조(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77조에 따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②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3. 청사·장비·시설·물품·재산 등의 유지관리
4. 관할 구역 내 포장도·사리도의 유지보수 및 재해대책
5. 지방도 기동보수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6. 관할 구역내 교량·터널·고가도로·지하차도·복개도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7. 과적차량 단속 및 적발차량 사법처리
- 8. 그 밖에 도로와 관련한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제58조 (관할구역 등)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7과 같다.

제6절 그 밖의 사업소

제59조(강원도서울본부) 강원도서울본부의 본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0조(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1조(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2조(강원도농산물원종장) 강원도농산물원종장의 장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63조(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4조(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①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에 연구담당관을 두며, 연구담당관은 지방농업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65조(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 ①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의 원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 연구담당관을 두며, 연구담당관은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제66조(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①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에 내수면담당관을 두며, 내수면담당관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7조(강원도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강원도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에 두는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위치(제2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길 26
강원도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216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114-5
강원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김화로 330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부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	1. 도내 전지역 총괄 2. 전담지역(12시군)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9	1. 전담지역(6시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8조제2항 관련)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춘천소방서	소양119안전센터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5	춘천시 소양동 · 조운동 · 약사명동 · 근화동 일원
	효자119안전센터	강원도 춘천시 효명길 8	춘천시 남면 · 남산면 · 효자1동 · 효자2동 · 강남동 일원
	석사119안전센터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	춘천시 동산면 · 동내면 · 석사동 · 퇴계동 일원 및 신동면 일부
	강촌119안전센터	강원도 춘천시 소주고개길 680	춘천시 남면, 남산면 일원 및 서면 · 신동면 일부
	신북119안전센터	강원도 신북읍 읍문리 264-89	춘천시 신사우동, 신북읍, 사북면, 북산면, 서면일부
	화천119안전센터	강원도 화천읍 강변로 155	화천군 화천읍 · 간동면 · 상서면 · 하남면 일원
	사내119안전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문화마을1길 6	화천군 사내면 일원
	양구119안전센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73번길 12	양구군 일원
원주소방서	학성119안전센터	강원도 원주시 학성길 122	원주시 중앙동 · 학성동 · 태장1동 일원 및 봉산동 일부
	단구119안전센터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255	원주시 행구동 · 반곡관설동 일원 및 봉산동 · 단구동 일원, 관부면 중 서곡리
	우산119안전센터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	원주시 우산동, 호저면 일원
	태장119안전센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	원주시 소초면 · 태장2동 일원
	문막119안전센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0	원주시 문막읍 · 지정면 · 부론면 일원
	신림119안전센터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7	원주시 신림면 · 관부면(서곡리 제외) 일원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502	강릉시 사천면 · 경포동 · 초당동일원
	내곡119안전센터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660	강릉시 성산면 · 왕산면 · 구정면 · 홍제동 · 내곡동 · 강남동 일원
	주문진119안전센터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26	강릉시 주문진읍 · 연곡면 일원
	포남119안전센터	강원도 강릉시 하평2길 23	강릉시 포남2동 · 송정동 일원 및 성덕동 일부
	옥계119안전센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시장길 163	강릉시 강동면 · 옥계면 일원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동해소방서	목호119안전센터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 12-4	동해시 발한동 · 목호동 · 망상동 · 동호동 일원
	북삼119안전센터	강원도 동해시 효자남길 33-10	동해시 북삼동 · 삼화동 일원
	북평119안전센터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21	동해시 북평동 · 송정동 일원
태백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	강원도 태백시 석공길 16-9	태백시 장성동 · 문곡소도동 일원
	철암119안전센터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552	태백시 구문소동 · 철암동 일원
	화전119안전센터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814	태백시 황연동 일원 및 삼수동 일부
속초소방서	영랑119안전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17	속초시 영랑동 · 동명동 일원 및 금호동 일부
	설악119안전센터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5길 39	속초시 대포동 일원
	양양119안전센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25	양양군 양양읍 · 서면 · 손양면 · 강현면 일원
	현남북119안전센터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155-33	양양군 현북면 · 현남면 일원
삼척소방서	도계119안전센터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446	삼척시 도계읍 · 신기면 · 하장면 일원
	원덕119안전센터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504	삼척시 원덕읍 · 가곡면 일원
	근덕119안전센터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길 37	삼척시 근덕면 · 노곡면 일원
홍천소방서	양덕원119안전센터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로 46	홍천군 남면 · 서면 일원
	서석119안전센터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512	홍천군 서석면 · 내촌면 · 내면 일원
횡성소방서	둔내119안전센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고원남로 42	횡성군 둔내면 · 청일면 일원
	우천119안전센터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향3길 5-2	횡성군 우천면 · 안흥면 · 강림면 일원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월소방서	주천119안전센터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67-15	영월군 주천면 · 한반도면 · 수주면 일원
	중동119안전센터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웅고개길 10-27	영월군 상동읍 · 중동면 · 김삿갓면 일원
평창소방서	진부119안전센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로 37	평창군 진부면 일원
	봉평119안전센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07-6	평창군 봉평면 · 용평면 일원
	대관령119안전센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62-20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
정선소방서	고한119안전센터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강원남로 6455	정선군 고한읍 일원
	신동119안전센터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342-4	정선군 신동읍 일원
	임계119안전센터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4길 9	정선군 임계면 · 여량면 일원
	사북119안전센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9	정선군 사북읍·남면 일원
철원소방서	동송119안전센터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251번길 17	철원군 동송읍 · 철원읍 일원
	김화119안전센터	강원도 철원군 서면 약수로 76	철원군 김화읍 · 서면 · 근남면 일원
인제소방서	원통119안전센터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276	인제군 북면 · 서화면 일원
	기린119안전센터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4100	인제군 기린면 · 상남면 일원
고성소방서	동광119안전센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320	고성군 토성면 · 죽왕면 일원
	거진119안전센터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수외길 19	고성군 거진읍 · 현내면 일원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9조제2항 관련)

소방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춘천소방서	춘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서 위치와 같다	소방서 관할구역과 같다
원주소방서	원주소방서 119구조대	“	“
강릉소방서	강릉소방서 119구조대	“	“
동해소방서	동해소방서 119구조대	“	“
태백소방서	태백소방서 119구조대	“	“
속초소방서	속초소방서 119구조대	“	“
삼척소방서	삼척소방서 119구조대	“	“
홍천소방서	홍천소방서 119구조대	“	“
횡성소방서	횡성소방서 119구조대	“	“
영월소방서	영월소방서 119구조대	“	“
평창소방서	평창소방서 119구조대	“	“
정선소방서	정선소방서 119구조대	“	“
철원소방서	철원소방서 119구조대	“	“
인제소방서	인제소방서 119구조대	“	“
고성소방서	고성소방서 119구조대	“	“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감자종자진흥원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안반덕길 11	도내 전지역 총괄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1조 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동 부 지 소	강원도 강릉시 모산로 214	강릉시 · 동해시 · 태백시 · 삼척시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남 부 지 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내길 47	원주시 · 홍천군 · 횡성군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중 부 지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제방길 15-8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북 부 지 소	강원도 속초시 장성천길 15-14	속초시 · 인제군 · 고성군 · 양양군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	1. 지방도 총괄 관리 2. 다음지역 지방도의 전담관리 춘천시(신동면, 동산면, 남산면, 남면, 서면 일부지역) 원주시 홍천군(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서석면, 동면, 내촌면, 남면, 서면) 횡성군 영월군(수주면, 남면, 서면, 북면, 주천면) 평창군(평창읍,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미탄면) 인제군(상남면 일부지역)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 룡 지 소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9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내면), 평창군(진부면, 도암면, 용평면) 정선군(북평면) 인제군(남면, 기린면, 상남면, 북면 일부지역)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 백 지 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정선군(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동면, 남면, 신동읍)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북 부 지 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춘천시(사북읍, 신북읍, 서면 일부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서화면, 북면 일부지역)

강원도공고 제2015-657호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취지

-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 강원도립대학의 전문 급식업체 활용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과 교육만족도 제고 및 직영대비 인력·비용 감소 효과에 기여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명확한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업기술원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미래농업교육원 구내식당 운영” 추가 와 강원도립대학 교학과 민간위탁사무에 “강원도립대학 구내식당 운영”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관, 전화 249-2266, 팩스 249-41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위탁사무(제4조제3항 관련)

소 관	위탁사무명
총무행정과	· 업무용 차량의 관리·운영(도지사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차량으로 한정함) · 청사관리 · 강원도청 어린이집 운영 · 강원도청 구내식당 운영 · 강원도 콜센터 관리·운영
기업지원과	· 강원도 향토공예관 관리·운영
국제교류과	· 국제회의산업(MICE)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마케팅과	· 강원도 중도관리사무소 관리·운영 ·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관리·운영 ·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무 · 관광홍보·마케팅에 관한 사무
문화예술과	· 강원국악 예술회관 관리·운영
체육과	· 강원도 노르딕경기장 관리·운영 · 강원체육회관 관리·운영
경로장애인과	·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여성청소년가족과	·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무 ·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관리·운영
보건정책과	· 한센병의 예방·치료 등 나병 관리에 관한 사무 · 결핵의 예방·홍보 등 일부 결핵 관리에 관한 사무 · 만성질환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 정신보건에 관한 사무 · 건강증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환경과	· 강원도 자연학습원 관리·운영
교통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서류의 제출 요청 ·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농업기술원	·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관리·운영 · 미래농업교육원 구내식당 운영
인재개발원	· 청사관리
강원도립대학	· 강원도립대학 구내식당 운영
서울본부	· 강원도민회관 운영 및 관리

강원도공고 제2015-658호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취지

- 근거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삭제하여 도 사무로 환원하고,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현지성 강한 일부업무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으로 도로 환원된 사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 지정된 정비구역의 변경 및 재개발구역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무

나.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현지성 강한 일부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1) 「하천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사무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기획조정실 기획관, 전화 249-2266, 팩스 249-41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자치 행정	1	도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강원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제13조
	2	등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및 판매폐지 신고	같은 조례 제11조
	3	은닉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4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
	4	도유 일반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5	도유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변상금의 조정·징수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81조
문화 관광 체육	1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의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9조의2
보건 복지 여성	1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23조제3항
	2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같은 법 제22조의3
	3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임면보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노인복지법」 제42조
	5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의 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6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7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나. 업무정지 다.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6조
	8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같은 법 제50조제1항
농정	1	공동방제 비용부담 명령서 교부	「식물방역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	지방관리 방조제 유지관리	「방조제관리법」 제6조
	3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시료수거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4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63조제1항
	5	가축의 방역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6	시장·군수(토지소유자 포함)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준공검사(법제2조제5호나목)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7	50ha미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시행인가 (자체 개보수사업에 한함)	같은 법 제9조
녹색 자원	1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 나.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공회전 단속 라. 과태료 부과·징수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9조
	2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허가에 따른 조건부여 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마. 과징금의 부과·징수 바.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사.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아. 처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의 검사 자.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 명령 차.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카. 위임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25조제4항 같은 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6조의2
	3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 및 처리금지 명령	같은 법 제46조
	4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6조의2
	5	강원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나.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다. 원상회복 면제승인 라. 공원입장료 결정징수 및 공원시설사용료 결정 징수 허가 마.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바. 공원구역 등 출입제한 또는 금지 사. 자연자원의 조사 아. 영업의 제한 또는 금지 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차. 공원대장의 작성보관	「자연공원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5조

	카.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타. 공원구역안에서의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협의(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처분에 관한 협의는 제외) 파.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71조
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권한	같은 법 제72조
7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다. 건설폐기물 보관기간의 연장에 대한 인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8	건설폐기물업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라. 과징금 처분 마. 건설폐기물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신고수리 바.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 사. 개선명령 또는 중지명령 아.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자. 휴·폐업 등의 신고수리 차. 청문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3항, 제22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57조
9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 요구 나. 처리이행보증의 조치 다. 처리명령 라. 승계자에 대한 처리명령 및 행정대집행 마. 처리이행보증에 대한 조치명령 및 보험금수령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제2항, 제4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10	특정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1	고랭지밭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12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대집행은 시장·군수)	같은 법 제15조제3항, 제4항
13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및 관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14	위임된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15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자료제출 요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3항, 제45조
16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하수·분뇨관련 영업자의 기술인력,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선발 및 자료제출 요청	「하수도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제5항, 제6항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의한 2종 내지 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2개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하는 사업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수리·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나.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다. 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41조제4항
18	황합유기준 초과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42조
19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82조
20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94조
21	과태료의 부과·징수	
22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23	고체연료의 사용승인(1종사업장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37조 「먹는물관리법」 제47조
25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의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7항
2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25조제3항
27	먹는물 관련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등의 신고수리(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41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제2항
28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수리(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48조제1항
29	품질검사 위탁검사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50조
30	사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51조
31	계시물의 제거 또는 봉인의 해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61조제3항
32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그 용기와 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1호, 제2항
33	영업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폐쇄, 영업정지(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34	청문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35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36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37	산림용 종묘검사 및 출하금지, 소독·폐기 등의 조치	
38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39 40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제5호 제외)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제1항제1호사목 및 제2호 제외)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마.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보호수의 관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권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제3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31조제1항
43	나. 시공업 등록의 말소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열사용기자재의 제조, 수입, 판매,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20만V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전기사업법」 제65조, 제71조
44 45 46 47	가. 승강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제작업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검사, 정기검사의 증인, 개선명령, 보고 및 검사 등 나. 계량기의 자체수리 인정 다. 계량기수리업 및 계량증명업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취소, 사업 정지, 등록증교부, 등록부 비치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부정계량기의 처리 사. 계량검사공무원 임명 아. 수수료 징수 가.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과기·수거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2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8조 「산지관리법」 제37조

	48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49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
	50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51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신청의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52	복구대행, 비용충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41조
	53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같은 법 제42조
	54	복구비의 반환	같은 법 제43조
	55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56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57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58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3항
경제 진흥	1	지방산업단지의 관리(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2	일반산업단지의 지정(30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가. 공고 및 열람 나. 합동설명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산업단지내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5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등록, 등록증교부, 등록부열람, 등록의 갱신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2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시·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 요청 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요청 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명령의 내용 통보 아. 영업정지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제확인을 위한 공고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제5항

		카. 실태조사 타. 등록수수료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6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공산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산품의 개선·수거·파기명령·보고·검사 등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제32조 같은 법 제41조
건설 방재	1	도지사가 관리청인 도로의 접도구역 관리 및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협예방을 위한 조치	「도로법」 제49조제2항, 제3항, 제4항
	2	도로점용료나 기타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단, 도로점용료는 2006.1.1이전 부과대상에 한한다)	같은 법 제90조, 제91조
	3	지방하천에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5조제2항
	4	다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나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6조
	5	하천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같은 법 제15조
	6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같은 법 제74조
	7	지방하천의 하천공사(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7조제5항
	8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같은 법 제27조제6항
	9	지방하천 하천공사의 준공고시(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제7항
	10	지방하천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같은 법 제29조
	1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허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
	12	동 공사비의 예치명령,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	같은 법 제30조제4항, 제5항, 제6항
	13	동 공사의 준공인가 및 필요한 검사의 의뢰(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1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2조제3항
	15	동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6항
	16	지방하천에서의 토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17	동 하천시설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18	동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하천횡단 시설물(교량, 보)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변경
	19	동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20	동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21	동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35조가 규정한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22	동 하천점용허가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제6항
	23	동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비 예치,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준공인가 신청 접수 및	같은 법 제33조제8항

24	준공인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동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6조
2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의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5항, 제50조제5항
26	동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37조제3항
27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38조
28	동 낙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등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9	동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30	동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공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8조
3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8조
32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9조
33	동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통지	같은 법 제70조
34	하천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72조
35	지방하천에서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1조
36	동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5조
3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예정지 지정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따른 협의(하천관리청 시행 하천공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76조
38	지방하천에서 토지등의 수용·사용(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8조
39	동 보고 및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0조
40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을 위한 청문(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1조
4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 통지, 보상금의 공탁, 보상대상자 결정, 보상금액 산정 및 지급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8조
42	전문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권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43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44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수리, 등록이전, 등록의 갱정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같은 법 제24조
45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같은 법 제6조
46	건설기계 등록원부비치·관리 및 등록원부의 등·초본교부, 열람	같은 법 제7조
47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명령) 및 재부착 등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48	등록번호표의 반납	같은 법 제9조
49	등록번호표 새김명령 등	같은 법 제11조
50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5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변경신고 등 수리	같은 법 제24조
52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매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5조제3항
5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같은 법 제26조
54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정지	같은 법 제28조
55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30조
5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같은 법 제34조의2
57	건설기계의 폐기	같은 법 제34조의3
58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5조
59	청문	같은 법 제36조
60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7조 및 부칙(제6252호) 제2조
61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같은 법 제43조 및 부칙(제6252호) 제2조
6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같은 법 제76조의2 및 부칙(법률 제6252호) 제2조
63	구획정리사업의 시공감독	같은 법 제77조 및 부칙(법률 제6252호) 제2조
64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는 제외)	「주택법」 제16조
65	감리자의 지정, 감리자 교체, 이의신청의 처리, 부실감리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
66	기 지정된 정비구역의 변경	삭제(도 환원)
67	재개발구역의 해제고시	삭제(도 환원)
6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이에 관한 고시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만,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지사가 결정한 도로에 직접 연결하여 이용되는 도시·군관리계획(도로의 변경은 접한지점의 시·종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한다. 단, 도로법에 의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삭도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바.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사. 광장(중로이하의 도로에 접하는 광장에 한한다) 아.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에 한한다. 다만, 어린이 공원 폐지는 제외한다) 자. 공공공지 차. 수도공급 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카. 전기공급 설비(변전시설 및 배전사업소에 한한다) 타. 가스공급 설비 파. 열공급 설비 하. 방송·통신시설 거. 시장 너.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더 학교(고등학교 이하에 한한다) 러. 공공청사(국가 및 도 단위 기관을 제외한다) 머. 문화시설 버. 체육시설(골프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 서. 도서관 어. 연구시설	
69 70 71 72 73	저. 사회복지시설 처. 공공직업훈련시설 커. 청소년수련시설 터. 하천(지방하천 이상을 제외한다) 퍼. 유수지 허. 저수지 고. 방화설비 노. 방풍설비 도. 방수설비 로. 사방설비 모. 방조설비 보. 장례식장 소. 도축장 오. 종합의료시설 조. 하수도(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초. 폐기물처리시설(광역시설을 제외한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폐차장 포. 보안시설(기존 : 납골시설) 호. 자연장지 경미한 도시 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이에 관한 고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이에 관한 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관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또는 폐지 및 이에 관한 고시 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다. 관련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라. 공시송달의 승인 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및 준공 검사,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완료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88조제2항, 제91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같은 법 제98조

74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같은 법 제133조
75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도시개발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마.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같은 법 제26조
76	사.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77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2
78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등록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나.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재교부 및 등록의 거부 다.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부착 및 봉인 라.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 마. 자동차변경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이전등록의 처리 사. 자동차 말소등록의 처리와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아.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자.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84조
79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 및 취소 등 나. 과징금 부과 다. 청문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80	임시운행 허가	같은 법 제27조
81	자동차 점검·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검사기간의 조정 등 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82	다. 검사유효기간의 경과의 통지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변경등록)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제한(변경등록제한) 마.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바. 자동차대여사업의 합병 사.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 아.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폐업 자.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10조제3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4항, 제35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5조제4항
	8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나.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 확인 다. 사용개시 기간의 지정 및 개시신고 라.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마.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바.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정명령 사.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인가, 신고 수리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아. 터미널사업 개선명령 자.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의 명령 차.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사업의 상속신고수리, 사업의 휴·폐지의 허가 카. 사업의 면허취소 및 정지명령 타. 사업자에 대한 청문 파.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하. 사업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접수 및 통보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84	택시운전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의 명령	같은 법 제87조
	85	여객자동차의 사용정지(시외버스는 제외)	같은 법 제89조
	86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시외버스운송사업 제외)	같은 법 제7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87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88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해양 수산	1	보호수면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

강원도공고 제2015-659호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취지

- 근거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었던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편의를 위해 위임받은 사무 중, 현지성이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으로 국가로 환원된 사무를 위임규칙에서 삭제

- 1) 「화학물질관리법」에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

나.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편의를 위해, 현지성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 1) 「전기사업법」에 의한 500KW이하 발전사업의 허가·변경등에 관한 사무
- 2) 「임대주택법」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에 관한 사무
-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등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관, 전화 249-2266, 팩스 249-41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 별표 1 】 <개정 2015.1.2.>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총 무 행정관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증 시·군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82조 같은 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제74조제3항 같은 법 제83조
	2	새마을금고 설립인가·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새마을금고의 정관변경 인가	
	4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5	새마을금고에 대한 명령	
	6	청문(법 제82조와 관련된 청문에 한한다)	
회계과	1	총괄 청 소관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관한 사무 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 및 매각 등 처분 다. 국유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 징수 라. 국유재산대장등 공부의 작성관리 마.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바. 국유재산변상금의 징수 2 은닉국유재산 및 무주부동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환수 등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법」 제25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9조,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같은 법 제66조제2항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7조
	2		
경 제 정책과	1	가격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다.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라.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된 도·소매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7조, 제16조제1항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
에너지 과	1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산물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부산물인 석유판매업중 부생연료유판매소를 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다. 석유제품의 공표(주유소·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 판매소에 한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제49조제2항제1호
	2	석유대체연료의 공표에 관한 권한(주유소·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 판매소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 시행규칙40조
	3	승강기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4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한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0조
	5	전기사업(송배전 부문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500KW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7조, 시행령 제62조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9조, 시행령 62조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0조, 시행령 62조
		라. 전기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2조, 시행령 62조
		마.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청문(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62조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61조, 시행령 62조
		사. 기술기준에의 적합 명령(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71조, 시행령 62조
		아. 사업개시신고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08조제2항, 시행령 62조
자 원 개발과	1	채굴계획인가의 신청기간 연장,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신고 수리	「광업법」 제42조제3항, 제42조의2제2항, 제3항
	2	광물 생산보고서의 접수	같은 법 제83조
	3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의 위치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3항
	4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4조제1항, 제2항제1호

	5	석탄품질유지 의무위반자(석탄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광업권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나. 고발	「석탄산업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 제2항
통 상 지원과	1	수입물품 중 국내 유통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여부의 확인검사 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제3호 같은 법 제3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4호 같은 법 제5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5호
북 지 정책과	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거주지보호 실태조사 및 대장의 작성·관리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농 업 기반과	1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체납처분	「양곡관리법(법률7432호)」 부칙 제4조
	2	양곡의소유자, 매매업자, 가공업자, 수출수입 및 보관 또는 수송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3	50ha미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시행인가(농업용수 개발사업 중 지하수 자체 개보수사업에 한한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
	4	10ha미만의 소규모개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정지 조사 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라. 사업시행의 인가·통지·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9조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5	마. 재산의 관리·처분승인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마. 사용료 징수 바. 사용료 면제 사.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같은 법 제14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아.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자. 행정재산등의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차.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총괄청 인계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카. 용도 폐지된 재산중 총괄청이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토록 지정한 재산의 관리 다. 국유재산의대장·등기부등본과도면의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 등·초본의 교부 등 파. 변상금 징수 하.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처리 거.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40조제2항4호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4조
산 립 소득과	1 2	산림조합에 대한 감독권한 조림비의 반환조치	「산림조합법」 제123조제2항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5조
산 립 관리과	1 2 3 4	임도시설비의 반환조치 사방지의 지정 국가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계획의 접수검토, 사방지의 지정고시 및 조건의 부과 사방지의 지정해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5조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20조
환경과	1 2 3 4 5 6 7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보고명령 및 검사 라. 조치명령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중 다음의 권한 가.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등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권리의무승계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가.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오염물질측정결과 접수, 주변지역영향조사 결과 접수, 오염물질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 조사 명령, 조사결과	같은 법 제31조

	공개 등	
	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집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후관리 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같은 법 제50조
	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통보, 징수, 납부, 수리, 사후관리 비용 및 이행물의 결정 등	같은 법 제51조
	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통보, 적립계획서수리, 납부 통보 등	같은 법 제52조
	마. 토지이용의제한, 계획서수리, 토지용도, 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람 등	같은 법 제54조
8	위임된 사무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61조
9	위임된 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68조
10	위임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나. 정기검사 수검명령	같은 법 제62조제4항
	다. 정기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라.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11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12	유독물 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제조업은 제외 한다)	삭제
13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조업은 제외한다)	삭제
14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제조업은 제외한다)	삭제
15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제조업은 제외한다)	삭제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삭제
17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제조업은 제외한다)	삭제
18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	삭제
19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한 권한중 대기 또는 수질분야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규모인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2개 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
	나.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7조
	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같은 법 제19조제2항

		라.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 조사명령 마.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 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아. 조치명령 자.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차.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카.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7조
	21	위임된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및 유독물영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설치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마. 자료제출 요구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별표13에 따른 2종 내지 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사업장, 2개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검사 의뢰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라. 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바.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사.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자.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차.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등 카. 기준이내배출량조정에 따른 자료제출요청 및 오염도검사의뢰 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제42조

		과. 과징금의 부과·징수 하. 과징금부과 처분 대상 배출시설의 인정 거.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너.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더.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러. 행정처분 명령의 이행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감사의 지시·의뢰 머.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 계획서 및 개선완료 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 감사의뢰,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수리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38조의4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23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개선명령·조업정지·폐쇄명령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68조제1항
	24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보고명령 및 감사	
	25	위임된 처분을 위한 청문	같은 법 제72조
	26	위임된 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27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 (토지매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토지매수협의회” 운영은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수 질 보 전 과	1	위임된 오수·분뇨·축산시설사업장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설치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마. 자료제출요구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2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	특정 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보고, 자료제출명령, 시설장비검사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4	과태료 부과·징수(「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7호, 제24호, 제27호, 제28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80조제4항
	5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망지에서 시행하는 사망탐설치·관리사업(특수목적용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망사업의 시행 -관리과 나. 사망사업의 설계·시공 다. 공무원의 조사 등 라. 손실보상 마. 보상금의 결정 바. 재결의 신청 사. 관리비용의 부담 아. 사업의 위탁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7조의2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 역 도시과	1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검사수시검사명령 및 검사증교부 나. 검사의 최고 다. 정비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같은 법 제13조제5항 같은 법 제13조제6항
	2	국유재산(구거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3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채비지의 집단지정 명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6252호) 제2조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5	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 신청의 접수·내용확인 다. 건설업의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의 조치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 말소 사. 지정명령·지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제8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건설업등록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86조제1항제12의2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86조제1항제13호
건축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가산금리 부과(유예·취소)	「임대주택법」 제39조,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도 로 철도과	1 2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기부 채납 다. 취득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라. 소관중앙관서의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도로법」 제49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24조
		마.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바. 관리전환의 협의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및 승인 사.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아. 사용허가의 갱신 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 폐지된 재산의 인계 차. 대부 카. 멸실 또는 철거 보고 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 귀속 협의 파.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하. 사용료 징수 등 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사실의 통보 너. 청문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같은 법 제7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서목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더.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러.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버.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어목
교통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나.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고속형시외버스 운송사업 제외, 그 외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운송 시설의 확인에 한함) 다.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기준 및 요율은 시외버스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내·농어촌버스는 도지사가 정함) 라.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계획변경인가,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 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바.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사. 양도·양수신고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 수리(시외버스운송 사업은 제외 한다) 아. 상속신고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자.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차.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제2항
		카. 개선명령(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타. 차령의 연장(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파. 사업면허의 취소, 등록의취소 및 운송사업의 정지처분(시 외 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하. 청문(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거.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84조제3항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2	여객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정지, 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한다) 나.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다. 차령연장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79조
	3	다른 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필한 자동차에 대한 보고·검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4	과태료 처분(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94조
	5	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업무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의14제3항
	6	택시미터 검정기관 지정 및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7조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라. 운송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마. 운송가맹점가입사업자의 소속운송가맹점 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서의 상호변경신고 바. 개선명령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아. 상속신고 자.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3조제3항 같은 법 제3조제7항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차.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수리 및 반환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하. 청문 마. 책임보험 계약 등의 미체결보험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38조
	8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나. 청문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9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다. 사업의 허가취소 및 정지 라. 운송주선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마. 책임보험계약등의 미체결 보험등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 바. 운송가맹점가입사업자의 운송가맹점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서의 상호변경 신고 사. 개선명령 아.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자. 상속신고 차.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카. 청문 타.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제3조제7항, 제24조제5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6조, 제28조 같은 법 제24조, 제38조 같은 법 제11조, 제28조 같은 법 제13조, 제28조 같은 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제17조, 제28조 같은 법 제21조, 제28조 같은 법 제22조, 제28조 같은 법 제18조, 제28조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운송가맹사업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7조
	11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운송가맹사업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70조
	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개서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1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 허가·허가증의 교부·개서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14	물류창고업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나.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다.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라.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의 휴·폐업의 신고수리 마.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바.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사.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아.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자. 청문 차.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4조, 제21조의7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1조의7 같은 법 제15조제2항, 제21조의7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21조의7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의7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62조제1호, 제1호의2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및 부칙(대통령령 제24206호, 2012. 11.27) 제2조
	15 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16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나. 사업면허 취소, 사업정지 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명령 다. 청문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 같은 법 제23제3항
치수와	1 댐 구역내에서의 다음의 권한 가. 「하천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의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허가 나. 동권리·의무이전의 신고수리, 같은법령 위반자 및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다. 동 허가·처분 등을 위한 댐 수탁관리자와의 협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2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토지의 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다.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 및 이의 고시 라. 그밖에 하천의 보전 · 관리에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 및 이의 고시 마.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바.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지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의고시 사.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아.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장·군수가	「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허가에 관 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자.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3조
3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8조
4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8조
5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 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5조
6		허가수수료의 징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9조
7		보고 및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 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0조
8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1조
9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 제6호, 제7호
10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8조제2항
11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구거, 하천,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의 다음의 권한(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을 제외한다) 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기부채납 다.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라.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마.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바.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사.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차. 대부 카. 멸실 또는 철거 보고 타. 관리전환의 결정을 위한 사전협의 및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파.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 귀속 사전 협의 하.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사실의 통보 거. 청문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국유재산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너.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더. 불법시설물의 철거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수 산 정책과	1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어업허가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32조제1항제9호 「농림수산업실시규정」 제37조
	2	국고보조시설의 사후관리(수산시설물에 한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제76조
	3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합여부 조사·점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저장 및 출하되기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 시설로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정한 기준에 의한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70조, 제76조
	4	생산·가공시설의 중지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제2항의 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70조, 제76조
	5	원산지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수산물에 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6	출입·조사 등(「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위임된 권한에 한한다)	같은 법 제7조
	7	원산지 표시방법의 지정명령	같은 법 제9조, 제13조
해 운 항만과	1	연안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항지역 및 분구의 설정 나.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다.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영의위임·위탁,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관리청이 아닌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 에 관한 사항 신고의 수리(국가에서 설치한 종합여객 터미널 및 부대시설 제외)	「항만법」 제2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
		라. 항만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결정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마. 비관리청의 사용료징수방법등에 관한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바.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권한의 위임이 있는 사항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한다)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아. 보고 및 검사 등 자.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차. 토지에의 출입 및 사용과 장애물 제거 카.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타.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파.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업무 하.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거.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제87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3조

강원도공고 제2015-662호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최근 의안처리 및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증가 등에 따른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의회사무처 조직을 재정비 보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입법지원담당관을 폐지하고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며, 운영예결전문위원의 직위를 수석전문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제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4

○ F A X : 033-249-4143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입법지원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제2항 별표의 “운영예결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제4호·제5호·제13호를 삭제한다.

제5조2 “입법지원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2. 의정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기자실 관리
3. 언론매체 광고계획 수립 및 추진
4. 의회사 편찬 및 의정자료 간행물 관리
5. 홍보책자 및 홍보영상물 제작 관리
6.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운영·관리
7. 의정활동 중계방송 운영 및 영상물 편집·제작
8. 그 밖에 의회의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을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조사·연구
2. 자치입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조례안의 체계·자구심사 의견제시
4. 의원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원이 요청하는 의정자료의 조사·지원
6. 각 전문위원실 일상경비 회계사무 처리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업무 지원
8.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보고
9.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
10.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11.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12.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13.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하부조직)① 처장 밑에 의정관, 의사관과 입법지원담당관을 두고, (생략)	제3조(하부조직) ① ----- <u>홍보담당관</u> 을 두고, (현행과 같음)
제4조(의정관) 의정관은 <u>다음 각호의 사무를 나 눠 맡는다.</u>	제4조(의정관) ----- <u>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u>	<삭 제>
5. <u>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존 관리</u>	<삭 제>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13. <u>홍보 기자재 관리와 음향시설 유지관리</u>	<삭 제>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입법지원담당관) <u>입법지원담당관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눠맡되, 입법1담당은 기 획행정위원회와 사회문화위원회 및 교육위원 회 소관, 입법2담당은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 건설위원회 소관을 각각 담당한다.</u>	제5조의2(<u>홍보담당관</u>) <u>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의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조사·연구</u>	1. <u>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u>

2. <u>자치입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u>	2. <u>의정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기자실 관리</u>
3. <u>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조례안의 체계·자구 심사 의견제시</u>	3. <u>언론매체 광고계획 수립 및 추진</u>
4. <u>의원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4. <u>의회사 편찬 및 의정자료 간행물 관리</u>
5. <u>의원이 요청하는 의정자료의 조사·지원</u>	5. <u>홍보책자 및 홍보영상물 제작 관리</u>
6. <u>그 밖의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u>	6. <u>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운영·관리</u>
	7. <u>의정활동 중계방송 운영 및 영상물 편집·제작</u>
	8. <u>그 밖에 의회의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u>
제6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나눠 맡는다.	제6조(전문위원)①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을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보고	1. <u>의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조사·연구</u>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	2. <u>자치입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u>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3. <u>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조례안의 체계·자구심사 의견제시</u>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u>의원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5. <u>의원이 요청하는 의정자료의 조사·지원</u>
	6. <u>각 전문위원실 일상경비 회계사무 처리</u>
	7. <u>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업무 지원</u>
	8. <u>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보고</u>
	9. <u>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u>
	10. <u>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u>
	11. <u>위원회 의사진행 보좌</u>

	12. <u>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u>
	13. <u>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u>
② 삭제	② <u>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맡는다.</u>
1. 의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조사 연구	1. <u>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보고</u>
2. 자치입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u>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u>
3.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조례안의 체계·자구심사의 의견제시	3. <u>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u>
4. 의원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u>위원회 의사진행 보좌</u>
5. 의원이 요청하는 의정자료의 조사 지원	5. <u>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u>
6. 그 밖의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6. <u>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u>

■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별표] [개정 2014.10.10.]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제2항 관련)

위 원 회	직 위	직 급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이나 지방별정4급 상당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전문위원	지방서기관이나 지방별정4급 상당
사회문화위원회	사회문화전문위원	지방서기관이나 지방별정4급 상당
농림수산위원회	농림수산전문위원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이나 지방별정4급 상당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전문위원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이나 지방별정4급 상당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	지방서기관이나 지방별정4급 상당

시 군 행 정

춘천시고시 제2015-133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공공청사,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5월 8일

춘 천 시 장

가. 결정(변경)취지

-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예정인 춘천시청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
- 기 개설되어 이용중인 2호주차장(시청 지하주차장)은 그 기능이 상실되므로 폐지.

나.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주차장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	노 외 주차장	춘천시 옥천동 111-1번지 일원	3,466	감)3,466	-	-	강고90-100호 (90.08.06) (일부 변경)

- 주차장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노 외 주차장	▪ 제2호 주차장 폐지 - 위치 : 춘천시 옥천동 111-1번지 일원 - 면적 : 3,466㎡	▪ 공공청사 계획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므로 시설에서 폐지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6	춘천시청	공공청사	춘천시 옥천동 111-1번지 일원	-	증)27,026	27,026	-	-

- 공공청사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80% 이하	1,300% 이하	지상 10층 이하	- 주용도 : 공공업무시설 - 부대, 편익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 공공업무시설

- 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6	춘천시청	- 제26호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옥천동111-1번지 일원 - 면적 : 27,026㎡	춘천시 청사신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

다. 춘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외 1개시설) 변경결정 도면 및 지적승인도면 : 실음생략

강릉시고시 제2015-13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강릉영동대학교) 경미한 결정(변경),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홍제동 1009번지 일원 내 강릉영동대학교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이 강릉시 고시 제2004-203호(2004.12.24.)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발생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세부조성계획(변경)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6층)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30일

강릉시장

가.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강릉영동대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붙임」 과 같음

나.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강릉영동대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117,486	-	117,486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1	-	1,801	1.53	
자연녹지지역	113,414	-	113,414	96.53	
계획관리지역	2,271	-	2,271	1.94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및 변경사유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③	학교시설	강릉영동대학교	홍제동 1009번지일원	113,334	증)4,152	117,486	강릉시고시 2004-203호 (2004.12.24.)	

※ 최종고시일 : 강릉시고시 제2010-89호(2010.8.25.)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편 입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3,334	증)4,152	117,486	100.0	-	100.0	
교육기본시설	10,813	증)10,113	20,926	9.5	증)8.3	17.8	
지 원 시 설	18,917	감)5,344	13,573	16.7	감)5.2	11.5	
부 속 시 설	5,686	감)328	5,358	5.0	감)0.4	4.6	
기 반 시 설	77,918	감)289	77,629	68.8	감)2.7	66.1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강릉영동 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변경 기정:113,334㎡→변경:117,486㎡ 증) 4,152㎡, 증감률:증) 3.7%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보조경기장을 학교시설 내 건설 -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주차장, 기숙사 및 운동시설 설치

②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 세부시설계획

☐ 건폐율 및 용적률 검토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비 고		
20		100		10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세부시설명		건축면적(㎡)			연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제1강의동 외 16동	제1강의동 외 16동	14,668.47	증)697.55	15,366.02	54,924.71	증)5,818.54	60,743.25	비 고
		건 폐 율(%)			용 적 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2.9	증)0.2	13.1	48.5	증)3.2	51.7	

☐ 건축시설계획 총괄표

시설명	세부시설명	시설규모						비 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제1강의동 외 16동	14,668.47	증)697.55	15,366.02	54,924.71	증)5,818.54	60,743.25	
교 육 기 본 시 설	제1강의동 외 7동	4,470.93	증)2,854.27	7,325.20	22,115.51	증)10,469.14	32,584.65	
지 원 시 설	기숙사-1 외 5동	7,368.01	감)317.19	7,050.82	18,394.02	증)5,102.58	23,496.60	
부 속 시 설	창업지원센터 외 2동	2,829.53	감)1,839.53	990.00	14,415.18	감)9,753.18	4,662.00	

☐ 건축시설계획 총괄표

시설명	번호	세부시설명	지하 / 층	부지면적 (㎡)			시설규모 (㎡)						비 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5,416	증)4,441	39,857	14,668.47	증)697.55	15,366.02	54,924.71	증)5,818.54	60,743.25	
교육기본시설	소 계			10,813	증)10,113	20,926	4,470.93	증)2,854.27	7,325.20	22,115.51	증)10,469.14	32,584.65	
	교-1	종합정보관	1/3	-	증)2,319	2,319	-	증)1,048.46	1,048.46	0.00	증)2,519.39	2,519.39	
	교-2	실험실습동	1/4	1,343	증)113	1,456	1,025.83	감)8.57	1,017.26	5,109.91	-	5,109.91	
	교-3	본관동	1/4	-	증)2,948	2,948	-	증)901.93	901.93	0.00	증)4,123.88	4,123.88	
	교-4	제3강의동	/5	2,798	증)1,126	3,924	754.00	-	754.00	3,710.00	-	3,710.00	
	교-5	제2강의동	/5	2,253	감)261	1,992	754.00	-	754.00	3,710.00	-	3,710.00	
	교-6	제1강의동	/5	2,283	증)144	2,427	1,084.32	감)36.00	1,048.32	5,371.20	-	5,371.20	
	교-7	학생회관	1/4	-	증)3,610	3,610	-	증)928.93	928.93	0.00	증)3,825.87	3,825.87	
	교-8	관광교육관	1/7	2,136	증)114	2,250	852.78	증)19.52	872.30	4,214.40	-	4,214.40	

시설명	번호	세부시설명	지하 / 층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지원시설	소계		-	18,917	감)5,344	13,573	7,368.01	감)317.19	7,050.82	18,394.02	증)5,102.58	23,496.60	
	지-1	기숙사-1	1/4	-	증)1,735	1,735	-	증)1,334.27	1,334.27	-	증)3,904.49	3,904.49	
	지-2	체육관	1/1	4,866	증)433	5,299	2,472.43	증)1,147.77	3,620.20	3,304.88	증)992.02	4,296.90	
	지-3	기숙사-2	1/4	-	증)1,148	1,148	-	증)417.96	417.96	-	증)2,086.56	2,086.56	
	지-4	안내실	/1	-	증)105	105	-	증)20.25	20.25	-	증)20.25	20.25	
	지-5	기숙사-3	1/8	-	증)2,090	2,090	-	증)1,458.89	1,458.89	-	증)8,361.88	8,361.88	
	지-6	기숙사-4	1/8	-	증)3,196	3,196	-	증)1,533.52	1,533.52	-	증)8,731.01	8,731.01	
	-	본관동	1/4	2,922	감)2,922	-	901.93	감)901.93	-	4,123.88	감)4,123.88	-	
	-	학생회관	1/4	3,429	감)3,429	-	1,928.93	감)1,928.93	-	3,825.87	감)3,825.87	-	
	-	종합정보관	1/3	2,130	감)2,130	-	1,074.72	감)1,074.72	-	2,519.39	감)2,519.39	-	
	-	창업지원센터	/4	5,570	감)5,570	-	990.00	감)990.00	-	4,620.00	감)4,620.00	-	
부속시설	소계		-	5,686	감)328	5,358	2,829.53	감)1,839.53	990.00	14,415.18	감)9,753.18	4,662.00	
	부-1	펌프실	1/	-	-	-	-	-	-	42.00	-	42.00	
	부-2	창업지원센터	/4	-	증)4,887	4,887	-	증)990.00	990.00	-	증)4,620.00	4,620.00	
	부-3	소공연장	-	609	감)138	471	-	-	-	-	-	-	
	-	기숙사-2	1/4	1,655	감)1,655	-	417.96	감)417.96	-	2,086.56	감)2,086.56	-	
	-	기숙사-1	1/4	1,102	감)1,102	-	969.08	감)969.08	-	3,904.49	감)3,904.49	-	
	-	안내실	/1	61	감)61	-	20.25	감)20.25	-	20.25	감)20.25	-	
	-	기숙사-3	1/8	2,259	감)2,259	-	1,422.24	감)1,422.24	-	8,361.88	감)8,361.88	-	

③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운동장시설 계획(변경)

☐ 운동장 시설(규모)계획 총괄표

시 설 명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 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개소	14,711	13,922	-	-	-	-	
운 동 장	3개소	14,711	13,922	-	-	-	-	

□ 체육장 시설(규모)계획 총괄표

시 설 명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 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 동 장	소계	3개소	14,711	13,922	-	-	-	-	
	운-1	대운동장	10,743	10,629	-	-	-	-	
	운-2	소운동장	2,462	2,526	-	-	-	-	
	운-3	테니스장	1,506	767	-	-	-	-	

2) 도로시설계획(변경)

□ 도로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연장(m)	면적(㎡)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합 계							1,642	15,939	
변경	합 계							1,572	15,616	
기정	중로	소 계						377	7,394	
변경	중로	소 계						360	6,842	
기정	중로	1	1	20	단지내도로	남동측구역계	중2-1	209	4,385	
변경	중로	1	1	20	단지내도로	남동측구역계	소2-1	298	5,858	
기정	중로	2	1	16	단지내도로	중1-1	소3-4	107	1,774	
변경	중로	2	1	16	단지내도로	소2-1	소2-3	62	984	
폐지	중로	3	1	12	단지내도로	소3-4	소3-3	61	1,235	
기정	소로	소 계						1,265	8,545	
변경	소로	소 계						1,212	8,774	
폐지	소로	1	1	10	단지내도로	소2-4	소2-2	65	666	
기정	소로	2	1	6	단지내도로	중3-1	소3-8	89	745	
변경	소로	2	1	7	단지내도로	소3-1	중1-1	152	1,279	
기정	소로	2	2	8	단지내도로	소1-1	소2-1	39	309	
변경	소로	2	2	7	단지내도로	중1-1	중2-1	76	766	
기정	소로	2	3	8	단지내도로	소1-1	소3-2	42	313	
변경	소로	2	3	7	단지내도로	소3-5	주-3	147	1,182	
기정	소로	2	4	8	단지내도로	중3-1	소2-3	95	766	
변경	소로	2	4	7	단지내도로	동북측구역계	소3-6	40	378	
기정	소로	2	5	8	단지내도로	노외주차장1	소3-6	102	815	
변경	소로	2	5	7	단지내도로	소2-3	소3-3	56	470	
기정	소로	3	1	7	단지내도로	소1-1	소2-5	79	560	
변경	소로	3	1	6	단지내도로	소2-3	소2-1	238	1,488	
기정	소로	3	2	6	단지내도로	소2-3	기숙사 I	117	718	
변경	소로	3	2	6	단지내도로	소2-5	녹지-2	60	354	
기정	소로	3	3	6	단지내도로	중2-1	중3-1	40	291	
변경	소로	3	3	6	단지내도로	소2-3	기숙사4	154	927	
기정	소로	3	4	6	단지내도로	중2-1	중3-1	57	474	
변경	소로	3	4	6	단지내도로	소3-3	기숙사2	122	690	
기정	소로	3	5	6	단지내도로	소3-8	소2-1	129	886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연장(m)	면적(㎡)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변경	소로	3	5	6	단지내도로	주-1	기숙사1	150	1,206	
폐지	소로	3	6	5	단지내도로	소2-5	기숙사 I	53	269	
폐지	소로	3	8	5	단지내도로	소2-1	소3-5	52	309	
폐지	소로	3	9	5	단지내도로	소2-3	제2강의동	82	443	
폐지	소로	3	12	4	단지내도로	소2-4	실험실습동	65	293	
기정	소로	3	7	5	보행자도로	중1-1	동측구역계	42	219	
변경	소로	3	6	2	보행자도로	광장1	소2-4	17	34	
폐지	소로	3	10	4	보행자도로	소3-9	제3강의동	14	63	
폐지	소로	3	11	4	보행자도로	학생회관	북동측구역계	59	268	
폐지	소로	3	13	3	보행자도로	소3-6	테니스장	44	138	

3) 주차장 시설(규모)계획

시 설 명	번호	세부시설명	단위	시 설 규 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 차 장	합 계			3,652	감)92	3,560	
	주-1	노상주차장	개소	2,638	증)58	2,696	
	주-2	노외주차장	개소	603	감)1	602	
	주-3	노외주차장	개소	51	감)3	48	
	주-4	노외주차장	개소	124	증)41	165	
	주-5	노상주차장	개소	236	감)187	49	

4) 광장시설계획

시 설 명	번호	세부시설명	단위	시 설 규 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광 장	합 계			458	감)35	423	
	광-1	광 장	개소	458	감)35	423	

5) 녹지 시설(규모)계획(변경)

시 설 명	번호	세부시설명	단위	시 설 규 모(㎡)				비 고
				규격	기정	변경	변경후	
녹 지	합 계				43,158	증)950	44,108	
	녹-1	녹 지	개소	-	25,462	증)1,108	26,570	

시 설 명	번호	세부시설명	단위	시 설 규 모(㎡)				비 고
				규격	기정	변경	변경후	
녹 지	녹-2	녹 지	개소	-	2,244	증)7,228	9,472	
	녹-3	녹 지	개소	-	6,458	감)6,225	233	
	녹-4	녹 지	개소	-	2,441	감)239	2,202	
	녹-5	녹 지	개소	-	1,648	감)600	1,048	
	녹-6	녹 지	개소	-	363	증)36	399	
	녹-7	녹 지	개소	-	2,317	증)321	2,638	
	녹-8	녹 지	개소	-	534	증)3	537	
	녹-9	녹 지	개소	-	649	증)4	653	
	녹-10	녹 지	개소	-	433	감)77	356	
	녹-11	녹 지	개소	-	609	감)609	-	폐지

6) 토지조서 : 실음 생략(열람서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계획과(033-640-5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고시 제2015-1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동법 제16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강 릉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강릉시 교동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주)티엔에스 대표 장재복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402호(교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강릉시 교동 850-1외 16필지

나. 규 모

1) 대지 면적 : 9,099㎡

2) 건축연면적 : 27,540.10㎡

3) 주택 형별 : 아파트 194호

4) 사업 규모 : 지하2층, 지상1~20층, 9동(주3, 부6), 부대복리시설

5) 사 업 비 : 38,700,0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5. 4. ~ 2016. 12. 30.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다.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라.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협의내역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	협의면적(㎡)		용 도 지 역	목 적	성 명	사업기간
				시설 부지	도로 부지				
교동	850-1 외 16	전,대,과,임, 도,등	9,145	9,099	46	제2종일반 주거지역	공동주택 건설 및 도로확장	(주) 티엔에스	2015.03 ~ 2017.04.30
계	17필지		9,145	9,099	46				
				9,145					

2) 관련 토지 조서

연 번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비고
							합계	공동주택 용 지	도로 용 지	
합 계				9,867	9,145		9,145	9,099	46	
1	교동	848-1	대	469	469	전**	469	469		제2종일반 주거지역
2	교동	848-3	도	50	50	정**	50	50		제2종일반 주거지역
3	교동	848-4	도	56	56	정**	56	56		제2종일반 주거지역
4	교동	849	전	489	489	정**	489	489		제2종일반 주거지역
5	교동	850-1	대	718	718	최**	718	718		제2종일반 주거지역
6	교동	850-2	대	132	132	최**	132	132		제2종일반 주거지역
7	교동	882-1	전	527	527	한**외1인	527	527		제2종일반 주거지역
8	교동	882-2	대	235	235	한**외1인	235	235		제2종일반 주거지역
9	교동	882-6	과	642	642	한**외1인	642	642		제2종일반 주거지역
10	교동	882-7	전	804	804	한**외1인	804	794	10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	교동	882-9	대	129	129	홍**	129	115	14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	교동	882-10	대	147	147	유**	147	129	18	제2종일반 주거지역
13	교동	882-12	전	235	235	최**	235	231	4	제2종일반 주거지역
14	교동	산183-1	임	44	44	김**	44	44		제2종일반 주거지역
15	교동	산184-3	임	562	562	김**	562	562		제2종일반 주거지역
16	교동	산186-1	임	3,978	3,865	최**외 1명	3,865	3,865		제2종일반 주거지역
17	교동	산186-2	임	650	41	강원도 (교육감)	41	41		제2종일반 주거지역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640-54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천군고시 제2015-161호

홍천 군계획시설(도로:중로3-24)사업 실시계획(4차)변경인가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1-270호(2011.7.29), 홍천군고시 제2011-99호(2011.8.19)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었으며, 홍천군고시 제2011-101호(2011.8.29)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홍천군고시 제2011-127호(2011.11.0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4-72호(2014.03.28.)로 실시계획(1차)변경인가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4-114호(2014.04.29.)로 사업시행자 지정(1차)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인가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4-295호(2014.11.14.)로 사업시행자 지정(2차)변경 및 실시계획(3차)변경인가 고시된 홍천 군 계획시설(도로: 중로3-24)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4차)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홍 천 군 수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홍천군 서면 모곡리 1262-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홍천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24) 조성사업
- 명 칭 : 클럽모우골프&라이프스타일 진입도로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시 설 명	면 적(㎡)	규 모	비 고
군계획시설 (도로: 중로3-24)	31,534	L= 1,112m, B=12.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법인지점)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주수
- 법인지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 대 표 자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08, 709동 1202호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실시계획 인가일(2011. 11. 04.)
- 준공예정일 : (당초) : 2015. 04. 30.
(변경) : 2015. 0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홍천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24)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여야 함.

■ 토지조서

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지적면적(㎡)	편입면적(㎡)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임야	2	11,813	11,813	11,813	-	37.46	
전	20	10,807	10,807	10,807	-	34.27	
답	7	5,552	5,552	5,552	-	17.61	
대지	1	377	377	377	-	1.19	
도로	2	1,712	425	425	-	1.35	
하천	1	90,521	1,116	1,116	-	3.54	
구거	4	28,630	1,444	1,444	-	4.58	
계	37	149,412	31,534	31,534	-	100.00	

나.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지적면적(㎡)	편입면적(㎡)	구성비(%)	비 고
국 · 공유지	7	120,863	2,985	9.47	
사유지	30	28,549	28,549	90.53	
계	37	149,412	31,534	100.00	

다. 동의현황

구 분		필지수	편입면적(㎡)	동의면적	구성비(%)	비 고
국 · 공유지		7	2,985	-	-	
사유지	계	30	28,549	28,549	100.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30	28,549	28,549	100.0	
합 계		37	31,534	28,549	100.0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권(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모곡리	1054-3	전	24	24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	모곡리	1054-4	전	325	32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	모곡리	1107-1	구	16,349	809	국(국토해양부)	-	-	-	-	국유지
4	모곡리	1109-2	전	47	47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5	모곡리	1120-1	임	55	5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6	모곡리	1121-1	전	332	33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7	모곡리	1123-4	전	747	747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8	모곡리	1124-2	전	540	54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9	모곡리	1125-2	전	115	11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0	모곡리	1127-1	대	377	377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1	모곡리	1128-2	답	1,739	1,73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2	모곡리	1128-1	도	456	196	국(농림수산 식품부)	-	-	-	-	국유지
13	모곡리	1131-1	구	6,193	111	국(국토해양부)	-	-	-	-	국유지
14	모곡리	1136-1	구	250	86	국(농림수산 식품부)	-	-	-	-	국유지
15	모곡리	1136-2	답	2,020	2,02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6	모곡리	1138-4	전	1,135	1,13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7	모곡리	1138-6	전	945	94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8	모곡리	1138-8	전	118	118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9	모곡리	1144-4	답	37	37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0	모곡리	1145-8	전	92	9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1	모곡리	1145-11	전	1,456	1,45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2	모곡리	1147-1	구	5,838	438	국(국토해양부)	-	-	-	-	국유지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권(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3	모곡리	1209-5	전	676	67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4	모곡리	1210-5	전	961	961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5	모곡리	1210-6	전	496	49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6	모곡리	1210-8	전	741	741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7	모곡리	1211-1	전	300	30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8	모곡리	1214-3	답	579	57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9	모곡리	1217-4	전	1,347	1,347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0	모곡리	1217-5	전	41	41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1	모곡리	1218-2	답	262	26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2	모곡리	1218-1	도	1,256	229	국(농림수산 식품부)	-	-	-	-	국유지
33	모곡리	1219-3	답	599	59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4	모곡리	1219-5	답	316	31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5	모곡리	1237-1	전	369	36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6	모곡리	1262-15	임	11,758	11,758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7	모곡리	1434	천	90,521	1,116	국(국토해양부)	-	-	-	-	국유지
-	-	37필지	-	149,412	31,534	-	-	-	-	-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서 협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클럽모우 골프장 진입도로 조성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사용기간은 2015-04-30부터 2015-08-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납부) 사용료는 일시납부로한다. 제3조의 사용료는 홍천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반환)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허가표찰의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 목적·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 하여야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써 사용 허가재산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홍천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인근토지의 소유자가 승인토지를 불가피하게 통행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취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3. 이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기타 피허가자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홍천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 만료 2개월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홍천군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홍천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용수로 및 배수로 관로막힘등 홍천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목적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홍천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홍천군의 결정에 따른다.

홍천군공고 제2015-549호

홍천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시설)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홍천군고시 제2014-370호(2014.12.26.)로 홍천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안)을 열람 공고하니 열람기간 내 홍천군청 환경위생과(033-430-2610)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8일

홍 천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홍천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시설)사업

나. 명 칭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커뮤니티센터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시설명	면적(㎡)	규 모	비 고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시설)	2,665	- 커뮤니티센터 1식 - 기반시설(진입로) : 8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 : 홍천군수(환경위생과장)

나.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15. 12. 31

6.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수질관리담당(033-430-2610)

나. 열람기간 : 도보 게재일로부터 14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1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59	답	1,308	1,180	홍천군	
2	홍천군	“	“	360	답	2,172	1,460	홍천군	
3	홍천군	“	“	361	답	1,008	25	홍천군	
계						4,488	2,665		

홍천군공고 제2015-560호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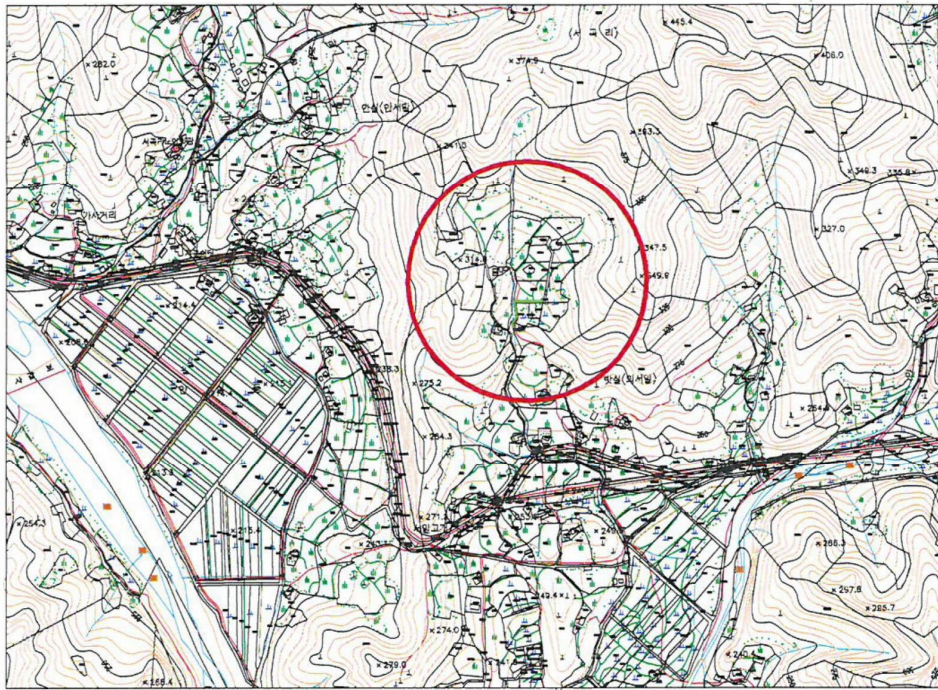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 448-9, 448-10번지
3. 도로길이 : 96.0m
4. 도로너비 : 4.0m이상
5. 도로면적 : 401.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401	401	
내촌면 서곡리	448-9	전	206	206	박*민, 박*성, 박*영, 어*경, 송*희, 이*우
	448-10	전	195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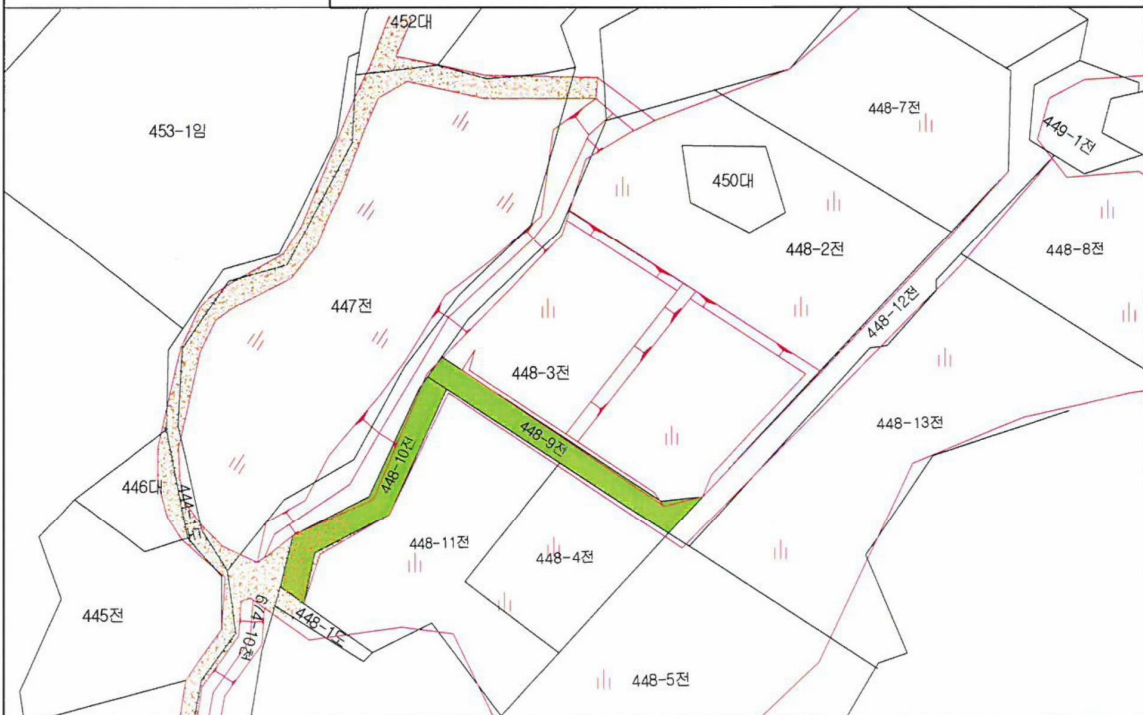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 1/1200



이해관계인과의 관련지번

홍천군공고 제2015-562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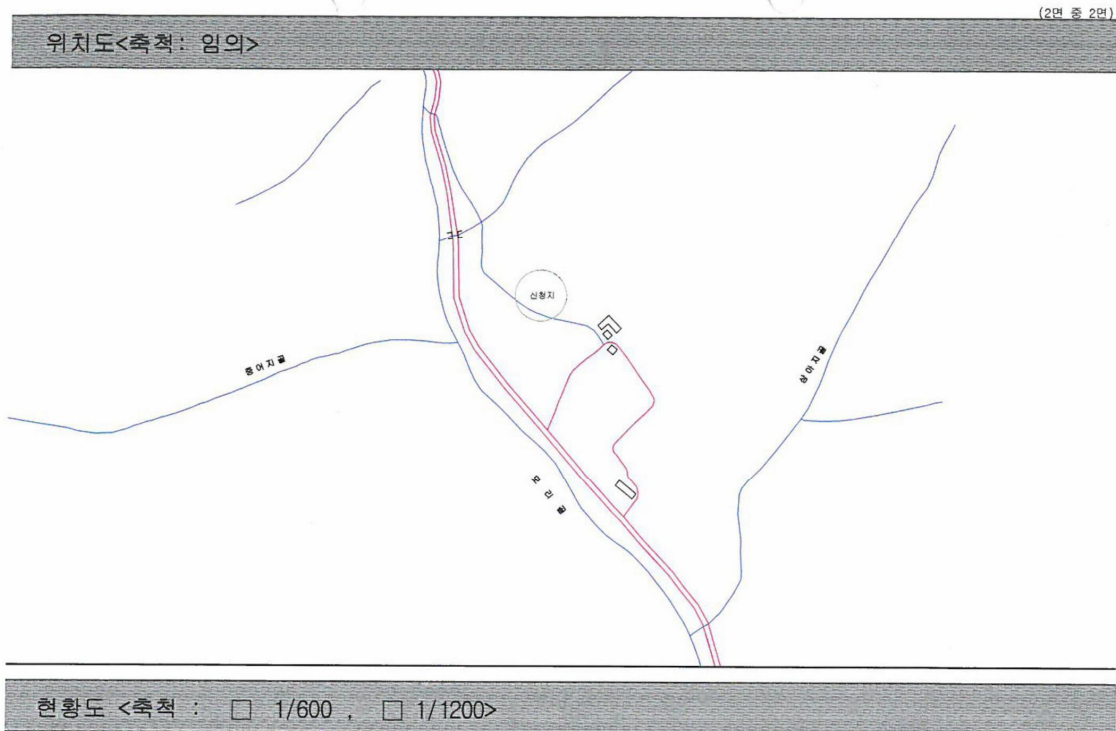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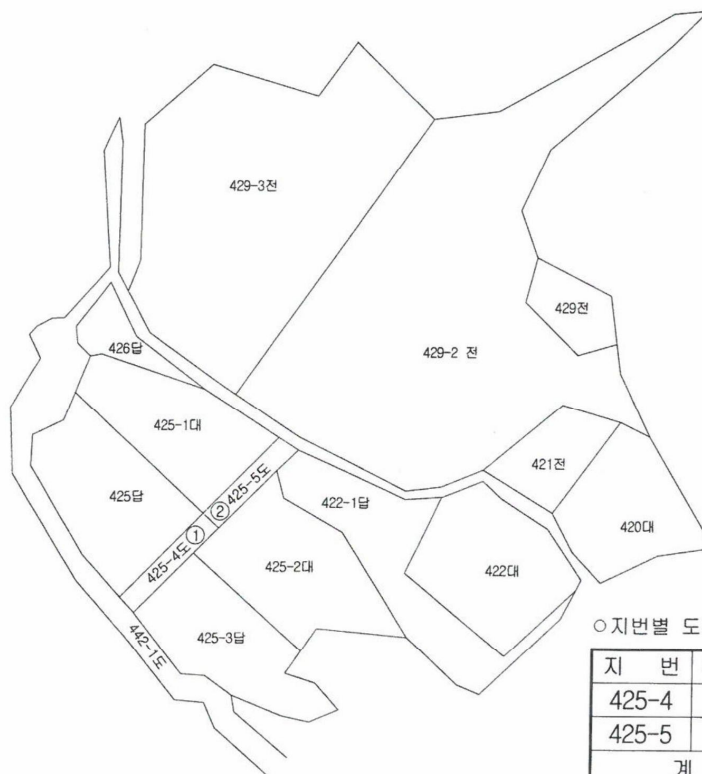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429-5(분할전 429-2), 425-4, 425-5번지
3. 도로길이 : 78.0m
4. 도로너비 : 4.0m
5. 도로면적 : 317.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317	317	
두촌면 천현리	429-5	전	138	138	박*근, 박*재, 이*문
	425-4	도	91	91	박*근, 박*복, 하*영
	425-5	도	88	88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두촌면 천현리 429-2번지



○지번별 도로지정면적 (단위: m²)

지 번	부 호	면 적	비 고
425-4	①	91	
425-5	②	88	
계		179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두촌면 천현리 425-4번지, 425-5번지

홍천군공고 제2015-565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1일

홍 천 군 수

1. 공 고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건축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131
3.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131
3. 도로길이 : 11.5m
4. 도로너비 : 3.0m
5. 도로면적 : 6.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592㎡	6.0㎡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131	대	592㎡	6.0㎡	김*환	

홍천군공고 제2015-567호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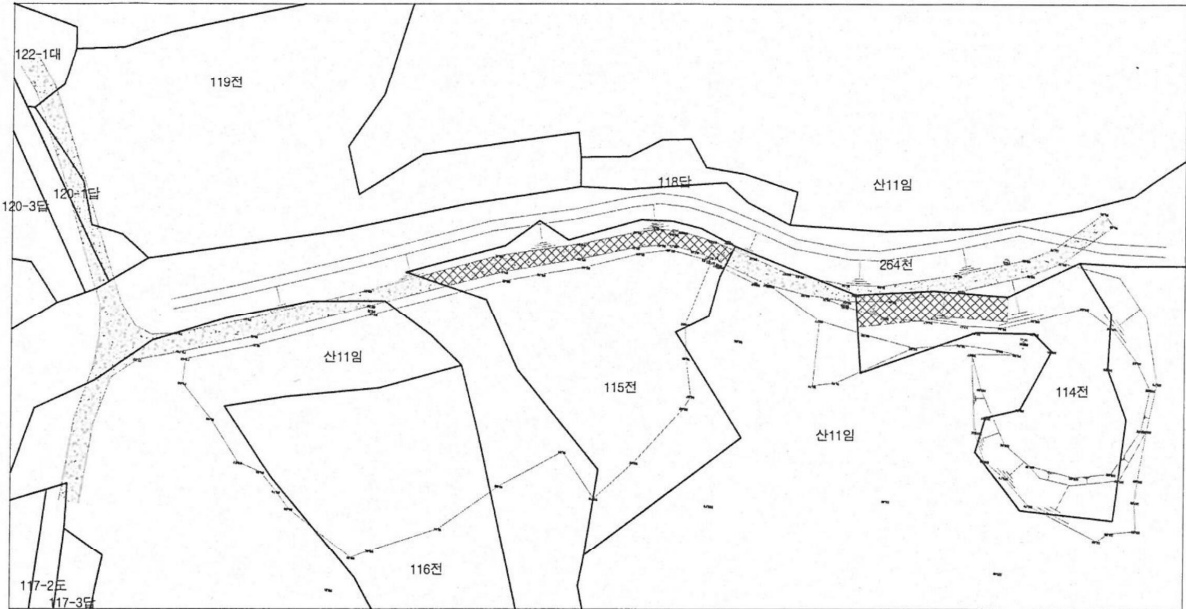
2015년 5월 1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114, 115번지
3. 도로길이 : 86.0m
4. 도로너비 : 4.0m
5. 도로면적 : 354.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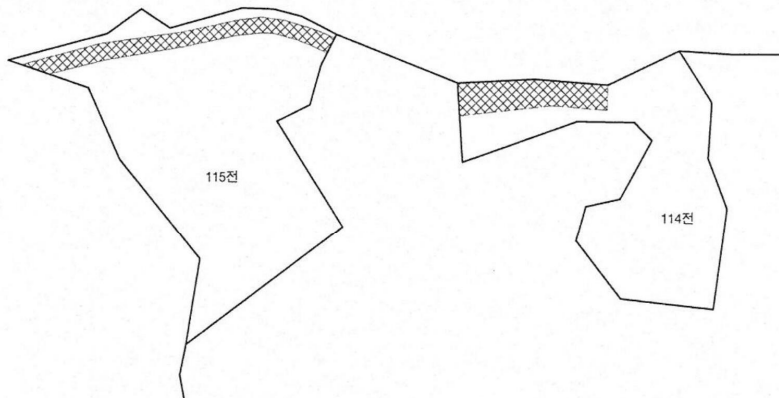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합계			3,353㎡	354㎡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114	전	2,060㎡	165㎡	최*길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115	전	1,293㎡	189㎡	민*영	

현황도 및 지적도



현황도

축척 <임의>



구 적 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 적		제외면적	용도구분	비 고
			부 지	도 로			
114	전	1,293	-	165	165	1,128	계획관리
115	전	2,060	-	189	189	1,871	
소 계		2,060	-	354	354	2,999	

지적도

축척 [] 1/1,200 , [Ⅴ] 1/2,400

정선군공고 제2015-342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고한읍 중2-8호선(고토일)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지구 내 설치된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한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정 선 군 수

1. 분묘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51-2
2. 분묘개수 : 1기(연고자 불명)
3. 개장사유 : 고한읍 중2-8호선(고토일)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내 편입
4. 개장방법 : ①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후 이장비 지급
②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6. 안치장소 :
 - 화장장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34(정선군 하늘터)
 - 봉안장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송동원길 203(정선 하늘공원)
 - ※ 안치장소는 납골당 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공 고 자 : 정선군수(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분묘자(고인)의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신고 및 열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033-560-2456)
11. 기 타 :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유골발생 시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철원군고시 제2015-19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토지세목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의거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 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세목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철 원 군 수

1. 도로노선지정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금회연장)	개발계획		구역 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갈말읍	농어촌 도로	갈말215호선	갈말215호	갈말읍 문혜리	갈말읍 문혜리	0.16km (0.16km)	7.5	7.5	도로확 · 포장

2. 공 사 명 : 갈말리도215호선(2포대~1포대) 도로확포장사업

3. 사업시행기간 : 2015. 04. ~ 2015. 09.

4. 사업시행지위치

- o 기점 : 갈말읍 문혜리 82-2
- o 종점 : 갈말읍 문혜리 산61

5. 사업시행자

- 성명 : 철원군수
- 주소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

6. 설계도서 및 자금 계획 등 공람 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
- 공람장소 : 철원군청 건설과 도로시설(☎033-450-422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붙임 참조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계의 주소 .

■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illegible]

고성군공고 제2015-290호

고성 군계획시설(학교:홀리분교)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성군 간성읍 홀리 55-1번지 일원에 홀리분교 골프연습장 및 창고시설 설치를 위한 고성 군계획시설(학교:홀리분교)사업이 공사고성군 공고 제2015 - 290호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고 성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고성군 간성읍 홀리 55-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고성 군계획시설(학교:홀리분교)
- 명칭 : 홀리분교 골프연습장 및 창고시설 설치 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단위:m²)

사 업 명	위 치	총 결정면적	기 시 공	금회시공	미시공
홀리분교 골프연습장 및 창고시설 설치공사	고성군 간성읍 홀리 55-1번지 일원	11,264	-	11,264	-

○ 사업규모

- 골프연습장(68.40m²) 및 창고시설(8.00m²) 증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성군
- 주 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9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일

- 착 공 일 : 2014년 10월 22일
- 준 공 일 : 2014년 11월 20일